

최종보고서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분석 연구용역

- 종합보고서 -

2023. 6.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출문

부산광역시 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분석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연구책임자 : 이 재 원 (부경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이 희 재 (창원대학교 교수)

허 형 조 (단국대학교 교수)

김 재 영 (성균관대 박사)

연구원 : 김 미 나(한국지방재정학회 사무국장)

---

# 차례

I. 서론 .....	1
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성과분석 의의 .....	1
2. 특별회계와 기금 성과분석 관련 선행연구(사례) .....	3
3. 연구의 주요 내용 .....	8
II.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현황 .....	10
1. 부산광역시 지방재정 일반현황 .....	10
2. 부산광역시의 예산과 기금회계 현황 .....	13
3.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과 추이 .....	17
4. 특광역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 비교 .....	29
III.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응답분석 .....	48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분포 .....	48
2.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인식일반 종합 .....	49
3. 설문항목별 응답결과 .....	50
4.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항목에 대한 AHP 설문 결과 .....	54
IV.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	57
1. 성과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 분석지표와 점수부여 .....	57
2. 성과영역별 종합분석 .....	62
3. 분석영역별 특성 종합 .....	74
V.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제도 개선과제 .....	76
1.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관리의 고도화 과제 .....	76
2.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의 사업방식개선 노력 강화 .....	78
3.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강화 .....	80
4.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가치비중 차이에 대한 유의 .....	81
[부록 1]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설문 .....	83
[부록 2] 설문항목별·응답자 유형별 상세결과 .....	89
[부록 3]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조사보고서 양식 .....	97

# I. 서론

## 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성과분석 의의

### ○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혁신 필요

-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수요 확대 대응, 정부 긴축재정 기조 등의 불확실한 미래 재정여건이 예상되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원활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에서 재정여력(가용재원) 확보 및 지속가능성 확립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은 통일성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중심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시기적 상황과 전략적 재정대응을 위한 예외로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설치·운영됨.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은 정기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존치 혹은 연장 필요성 그리고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사업 및 비효율적 사업을 확인하고 최소한 예산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 세입·세출 특성에 따른 예산의 유형

-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세입·세출을 통해 공공재원을 동원하고 예산재원을 배분하는 제반 과정과 내용을 총괄하는 회계임. 일반회계 중심 예산운영을 통해 재원배분의 칸막이 병리가 줄어들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특별회계 : ① 지방공기업법의 지방직영기업 ②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과 구분 회계처리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지방자치법 제 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
- 기금 :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함. 기금의 설치·운용은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표 1-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중앙정부)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 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	-특정사업·자금운영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 총당	특정목적에 대해 특정자금을 운용
운용 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원칙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
예산 확정 절차	-부처의 예산요구와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심의·의결확정	좌동	-기금관리주체가 운영계획(안) 수립,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국회심의·의결 확정
집행 절차	-합법성에 입각, 엄격 통제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	좌동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 지출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 변경	추경예산편성	좌동	주요항목지출금액의 20%이상 변경시 국회 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좌동	좌동	국회 결산심의 승인

<표 1-2> 예산과 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 예산회계의 성과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지방재정법 제5조).
- 기금 :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야 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 ※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예산과 기금을 통합 운영·관리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분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음.

## 2. 특별회계와 기금 성과분석 관련 선행연구(사례)

○ 대구광역시 기타특별회계·기금폐지 사례(2022년)

- 17개의 기금 중 8개의 기금 폐지, 12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3개의 기타특별회계 폐지 등을 통해 가용재원 2,391억원 확보
  - ※ 기금 가용재원 2,085억원, 기타특별회계 가용재원 306억원
- 기금 및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발생
  - ※ 사회복지기금 : 장애인 이동 지원사업(하이패스 단말기 무상보급)  
체육진흥기금 : 체육복지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 특별회계 폐지기준 :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3개 폐지, 법정특별회계 및 목적세 재원 운용이 필요한 특별회계는 중장기 검토
  - ※ 예,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야 함.
- 기금 폐지기준 : 법정·의무설치기금, 잉여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제외한 8개 기금 폐지

<표 1-3> 대구광역시의 기타특별회계·기금 폐지 사례

기타 특별 회계	법정의무(4)	목적재원(4)	자체(4)	
	의료급여기금	산업단지	도시철도사업	
	광역교통시설	재정비축진	중소기업육성기금	
	소방	수질개선	기반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사업	경부고속철도변정비	
기금	법정의무(5)	법정재량(3)	자체(9)	
	도시주거환경정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매다사티기금
	재난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주 : 음역내 가운데 줄친 부분은 폐지대상

<표 1-4> 서울특별시 기금성과분석 지표체계(2022)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기준
1. 기금설치 목적의 타당성	1-1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금 목적의 유효성	1) 현재 경제·사회·행정 환경을 고려할 때 기금의 목적이 타당한가? 2) 기금의 설치목적이 서울시 주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가? 3) 서울시의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4) 기금의 설치목적 및 존치 필요성에 관한 대내외 지적사항이 있었는가?
	1-2 안정적 자원 확보의 필요성	1) 기금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필요한가? 2) 기금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이 아닌 다년도·지속사업을 수행하는가? 3)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가?
	1-3 신축적 자금 운용의 필요성	1) 기금의 설치목적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소요가 자주발생하는가? 2) 기금의 설치 목적상 사업계획 및 지출금액의 탄력적 변경이 필요한가? 3) 기금 사업의 특성상 회계연도 준수가 불가능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2. 타회계와 중복성	2-1 타 회계와의 중복성 유사성	1)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3. 자원조성의 적정성	2-1 자체재원의 인정성	1) 최근 5년평균 기준, 타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이 어떠한가?
	3-2 자체 재원의 적정성	1) 기금이 목적사업과 연계된 자체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3-3 자체 수입 창출의 가능성	1) 기금의 향후 자체 자원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4. 개별 사업의 적정성	4-1 개별 사업의 목적 부합성	1) 개별 사업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 목적간 연계성(논리적 연결성)이 명확한가? 2) 개별 사업의 목적이 기금의 목적 사업에 적합한가?
	4-2 개별 사업의 목적 달성도	1) 개별 기금 사업이 목표한 계획 도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2) 개별 사업의 계획이 부실하거나 성과목표(output)가 설정되어 있는가?
	4-3 개별 사업의 효과성	1) 기금 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가시적인 성과 (performance)가 있는가? 2) 기금 사업이 서울시 행정, 서울 시민의 삶에 미치는 효과(outcome)가 우수한가?

주 : 신가희·박성문(2022:44)

○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관리방안」(신가희·박성문, 2022)

- 서울시 기금 17개 중 8개 존속기간 도래 대비 기금 정비방안 마련 필요. 유사제도인 기금준치평가·기금운용성과분석제도 참고해 성과분석 틀 마련
- 성과분석 결과, 기금, 타당성-건전성-유사·중복성-효율성 등에 한계 해석. 문제점 유형화해 사업 구조조정·통폐합 등 다양한 정비방안 도출
- 평가단 운영 : 서울시 17개 기금(25개 계정)과 기금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기획재정부 기금사업, 보조사업, 서울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경험 있는 재정·행정 분야의 전문가 5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

<표 1-5> 서울특별시 기금정비 제안(신가희·박성문, 2022)

기금명(계정명)	정비방안
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 체육진흥기금	- <b>일반회계 사업 이관</b> -단, 기금이 갖는 상징성, 관련단체 지원등 특수한 정책 필요성이 있는 경우 매년 기금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존치 여부 재평가
대외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국내/국제)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b>통합</b>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주거지원)	-자체 재원발굴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중장기재정계획수립 제출 -기금사업의 성과관리계획 수립.제출 -유사·중복 사업을 <b>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b>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자활)	-기금 사업의 성과관리계획 수립.제출 -유사·중복 사업을 <b>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 운영</b>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사회투자기금	-융자금 회수 기금 수익성 확보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제출 -기금 사업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출
도시재생기금            기후변화기금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할 수 있는 신규 고유목적 사업 발굴 계획 수립.제출 -기금사업의 성과관리 개선계획 수립.제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플라자) 재난관리기금(구호/재난) 하수도사업화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 및 사업을 정상 추진하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점검 필요

자료 : 신가희·박성문(2022:119).

○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방안 마련 연구 (박충훈 외, 2019)

-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성과 분석은 재원조성의 안정성, 합목적성, 운영 효율성 등을 통해 분석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집행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기금은 세 가지 분석 기준을 통해 운용성과를 분석
- 분석결과 사업성기금의 정비방안, 유사 기금-특별회계 정비방안, 기금목적 달성 또는 운용실적 저조에 따른 기금 폐지 등을 제시

<표 1-6>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와 정비기준

성과 지표	평가지표	세부지표	내용	비고
	성과 지표	재원조성의 안정성	재원조성의 안정성	- 재원조성방법
- 재원의존율 · (도 출연금/조성액)X100 · [(도 출연금기금운용수익)/총지출액]X100				계량
합목적성		고유목적 사업비율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총지출액)X100	계량
운영 효율성		유사 중복성	- 일반회계 유사 중복 사업 여부	비계량
	집행률	- 기금 : (집행액/지출계획 현액)X100 - 특별회계 : (집행액/예산현액)X100	계량	

사업성 기금 정비 기준	구분	정비기준	지표
	정량	재원의존율=(도출연금+운영수익/기금총조성액)X100	지표값 평균 80% 이상
고유목적사업비율=(고유목적사업비/지출총액)X100		지표값 평균 10%미만	
정성	법정기금 여부	법정기금 여부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사업과 유사 중복여부	중복성(일반회계 편입가능성)	
	재원조성방법 다양성	도 일반회계 이외 재원 조성	

자료 : 박충훈 외(2019:134)

<표 1-7> 경기도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제안(박충훈 외, 2019)

정비방안		해당 특별회계·기금
사업성 기금 정비대상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원), 서영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19년 운영실적으로 추후 판단)
유사 기금·특별회계 정비대상	기금간 통합	농업발전기금/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기금·특별회계 통합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특별회계 전환	에너지기금
폐지		통합관리기금
일몰		신청사건립기금

자료 : 박충훈 외(2019:168)

○ 기획재정부 기금준치평가 기준(2022)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1. 개별 사업의 적정성	1-1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1) 사업의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한가? 2)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당초 또는 변경된 설치목적과 일관적인가? 3) 사업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
	1-2 사업주체·운영의 적합성	1) 사업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집행할 경우 적절한 집행이 불가능한가? 2) 사업을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 3)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3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1)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2) 타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2. 재원 구조의 적정성	2-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1) 기금의 과거5개년 및 향후 3년누적의 자체수입이 동기간[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자상환+차입금)자상환]의 2/3이상인가? 2)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총수입에서 동기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 3)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이 없는가?
	2-2 중기용자산규모의 적정성	1) 기금이 중기용자산을 적정규모 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3. 기금 준치의 타당성	3-1 기금목적의 유효성	1)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의 유효한가? 2)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의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3-2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1)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의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3-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1)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2) 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의 평가항목과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지표 측정
1. 기금의 효율적 활용	1-1 사업비 편성비율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1-2 사업비 집행률	사업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실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여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제·개정여부
2. 기금 운용의 건전성	2-1 미회수채권비율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2-2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적정성	다음의 4개 항목중 충족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1)위원중민간전문가비율1/2이상 2)소집회의연간2회이상개최 3)소집회의시위원평균참석율1/2이상 4)소집회의시위원평균참석율2/3이상
	2-3 타회계의존율	기금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의 비율(%)
3. 기금 정비	3-1 재정수입대비 기금조성액비율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
	3-2 기금수 현황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기금수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제외

### 3. 연구의 주요 내용

#### ○ 특·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 분석·비교

- 기타특별회계·기금 현황 분석 및 비교(2023년 본예산 기준)
  - 기타특별회계 : 설치목적(법정/비법정)별, 자원 조성 형태별
  - 기금 : 설치형태(법정의무/법정재량/임의)별, 자원 조성 형태별
- 최근 5년간 기타특별회계·기금의 변동(통폐합/폐지/신설) 사례 분석
- 기타특별회계·기금 현황 및 변동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각 기타특별회계·기금의 타 특·광역시 설치·운영 현황

#### ○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분석

- 기타특별회계·기금 성과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및 지표 도출
  - 기타특별회계·기금 성과분석 관련 부서의견 조화·검토
  - 여러 계정인 기타특별회계·기금은 계정별로 분석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필요성 검토
- 기타특별회계·기금의 자원 조성 형태별 검토
  - 자체수입 비중, 타 회계 의존율 등
- 기타특별회계·기금 사업의 유사·중복·비효율 검토
  -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경우 등
- 기타특별회계·기금의 집행성과 검토

#### ○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안

- 기타특별회계·기금의 정비(통폐합/폐지) 기준 제시
  - 설치목적과 자원·용도의 부합성, 기타특별회계·기금 형태 유지의 불가피성 등 재검토
  - 「국가재정법」 제14조 및 제15조 등 고려
- 기타특별회계·기금 정비안 제시
  - 기타특별회계·기금 정비안 관련 부서의견 조화·검토
  - 여러 계정인 기타특별회계·기금은 계정별로 정비안 제시

- 기존 제도(존속기한, 재정계획심의위,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와 연계
- 기타특별회계·기금 정비 시 확보가능한 재원규모 도출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포함
- 기타특별회계·기금 신설 요구 시 필수 고려사항 검토
  - 필요성, 절차, 재원 확보방안, 운용방안 등

○ 부산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편성·운용 효율화 방안

- 기타특별회계·기금 내 사업의 효율화 방안 검토
  - 기타특별회계·기금 효율화 방안 관련 부서의견 조회·검토
  - 유사·중복사업 사업 통폐합, 일반회계로 대체 편성 등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보가능한 재원규모 도출
  - 1개 기타특별회계·기금 多부서·계정인 경우 효율적 운용 방안
- 그 외 성과분석 결과 관련 기금 편성 및 운용 효율화 방안 제안 등

## Ⅱ.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현황

### 1. 부산광역시 지방재정 일반현황

#### ○ 지방세입 현황과 추이

- 부산광역시의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5조 3,277억원임. 최근 10여년동안 예산규모가 두 배 정도 증가했지만 세입구조는 취약한 상태가 지속
- 지방세입에서 보조금의 비중이 36.7%로 가장 높고 지방세 비중은 33%에 그침. 지방세 비중은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조금은 2010년 28.8%에서 2023년 36.7%로 지속 증가
- 최근 10여년동안 부산시의 세입의 특징은 지속적인 규모증대와 세입구조의 취약성 지속임.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43.7%로 낮아졌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54.8% 수준

<표 2-1> 부산광역시 본청의 지방세입 추이

(단위 : %, 억원)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지방세	33.8	35.0	34.9	32.2	33.9	33.0
세외수입	21.9	9.2	8.3	8.0	7.0	6.8
지방교부세	9.3	10.0	8.4	8.6	8.7	9.0
보조금	28.8	29.6	34.0	35.5	36.1	36.7
지방채	6.2	5.8	4.5	4.9	2.7	12.2
보전수입등	-	10.5	10.0	10.7	11.5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	78,502	91,909	125,907	133,010	142,690	153,277
재정자립도	54.1	46.8	45.3	41.4	43.0	43.7
재정자주도	68.2	60.8	56.6	52.6	54.3	54.8

주 :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홈페이지

○ 지방세입 구조 취약에 따른 자치분권과 재정관리 효율성 쟁점

-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형성되면 부산시의 자체재원들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위한 재원의 성격을 강해짐. 부산의 자체사업에 대한 재원동원 기능이 약화되어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
- 중앙정부가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사회 방향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쟁점이 상당함. 수직관리체계의 행정관리 비효율성, 정보격차와 도덕적 해이, 연성예산제약, 재정건전성 위기 동시성, 국가재정부담의 지방전가 등의 재정위험 요소 다수

○ 특·광역시 지방재정 건전성과 부산

- 특·광역시는 재정의 지리적 외부성이 높아, 도시기반과 도시사회(복지)의 재정지출 수요 특성상 재정경직성과 재정압박에 대한 쟁점이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음. 재정건전성 지표에서 부산광역시는 재정건전성과 재정경직성 그리고 재정유연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

<표 2-2> 전국 특·광역시 주요 재정지표 비교 (2021)

(단위 : %)

	가용재원비율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비율
<b>부산</b>	<b>9.55</b>	<b>0.55</b>	<b>68.38</b>
서울	12.48	5.09	69.64
대구	11.34	3.31	85.62
인천	9.44	6.15	48.80
광주	11.45	-1.76	68.11
대전	11.37	-2.35	56.49
울산	10.63	-0.94	70.31
유형평균	11.20	2.45	66.27
전국평균	10.50	1.94	69.95

주 : 1) 2021년 결산기준 2) 가용재원 : 53개 통계목의 자체사업비 합계(당초예산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2022). 「2022년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2021년 결산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가용재원비율은 9.55%로서 인천과 함께 상대적으로 지표값이 낮은 수준임. 유형평균 11.2%와 전국평균 10.5% 보다 낮아 재정운영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경상수지비율은 68.38%로서 유형 및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의 경직성 쟁점은 크지 않음.
- 재정건전성을 확인하는 대표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55%로서 서울이나 인천과 비교할 때, 절대적 수준에서 낮은 편임. 다만, 광주와 울산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해석됨.
- 가용재원비율이 낮고 재정건전성 쟁점이 지방세입과 세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산회계와 기금회계의 성과를 분석하고 효율과 효과 그리고 관리체계의 적절성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2-3> 부산광역시 세출기능별 비중 분포 추이

(단위 : %, 억원)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일반공공행정	11.2	11.8	10.0	7.8	10.5	10.1
공공질서및안전	1.5	1.7	4.4	4.3	4.2	4.3
교육	6.6	6.4	5.7	5.4	5.5	6.1
문화및관광	3.9	2.9	3.2	3.2	3.5	3.1
환경	6.5	6.5	7.0	5.5	5.9	6.7
사회복지	<b>25.0</b>	<b>33.9</b>	<b>40.1</b>	<b>41.0</b>	<b>42.0</b>	<b>43.1</b>
보건	1.0	1.2	1.3	1.4	1.7	1.3
농림해양수산	1.5	1.7	1.2	2.7	1.2	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	3.4	2.8	3.2	3.1	2.6
교통및물류	<b>27.5</b>	<b>19.3</b>	<b>13.4</b>	<b>13.9</b>	<b>11.0</b>	<b>10.8</b>
국토및지역개발	6.0	4.2	4.1	3.3	3.8	4.3
과학기술	-	-	0.0	0.1	0.0	0.0
예비비	0.8	0.7	0.5	0.5	0.4	0.5
기타	5.6	6.3	6.3	7.7	7.1	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78,502	91,909	125,907	133,010	142,690	153,277

주 :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홈페이지

## ○ 부산광역시 본청의 재정기능별 비중과 추이

- 부산광역시본청의 재정기능은 최근 10여년동안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재정규모가 두 배정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세출기능에서 구조적 비중 변화와 재정우선순위의 변화가 발생
-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2010년 25.0%에서 2023년 43.1%로 18.1%p 증가했음. 이와 달리 교통및물류기능은 27.5%에서 10.8%로 대폭 축소됐음. 사회복지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이 90% 정도를 차지하여 관련 예산회계 관리의 쟁점이 중앙정부로부터 발생하는 요인이 있음. 자체사업이 많은 도시개발 재정지출 비중이 축소될 경우, 관련 개별 예산회계제도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 상대적 재량성이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세입재원구성과 재정사업관리 등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비중구조 변화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관리의 개별 회계의 효율과 효과 그리고 재정관리의 적절성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필요

## 2. 부산광역시의 예산과 기금회계 현황

### ○ 특광역시의 예산구조와 비교

- 2022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부산예산 14.3조원중 기타특별회계는 2.3조원으로 16.5%임. 기금운영규모는 1.3조원으로 예산대비 8.8% 수준
- 특광역시의 예산과 기금의 내역별 규모를 비교하면, 평균적인 수준임.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비중이 25.3%이기 때문에 평균이 높아진 경향이 있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부산의 비중이 가장 높음. 상대적인 관점에서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개수와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성과분석이 중요할 수 있음.
- 기금 운영규모는 기타특별회계와는 달리 예산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특광역시의 평균은 10.1%이며 광역시에서는 광주 다음으로 낮음. 상대적 관점에서 기금회계의 영세성과 비용-효과성 쟁점이 중요함.
-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이 설치된 숫자를 기준으로 특광역시를 비교하면, 부산은 기타특별회계 숫자는 16개로 가장 많고, 계정수 기준으로 기금(계정)의 수도 26개로 가장 많음.

<표 2-4> 전국 특·광역시 본청의 예산회계 현황 (2022)

(단위 : %, 억원)

	예산				기금비중 (예산대비)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특회	기타특회	합계		예산합계	기금
부산	78.0	5.6	16.5	100.0	8.8	142,690	12,606
서울	70.9	3.8	25.3	100.0	7.9	442,190	35,021
대구	79.1	5.5	15.3	100.0	9.1	101,444	9,190
인천	71.0	13.8	15.3	100.0	9.5	131,442	12,529
광주	80.9	4.1	15.0	100.0	6.3	70,094	4,420
대전	83.5	4.9	11.6	100.0	14.9	65,617	9,784
울산	83.0	7.6	9.5	100.0	14.3	44,104	6,312
평균	78.0	6.5	15.5		10.1		

주 : 2022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지방재정365

<표 2-5> 전국 특·광역시 본청의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의 개수 비교(2023)

(단위 : 개)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특별회계	합계	16	10	9	15	12	13	8
	법정	9	7	7	7	8	10	4
	비법정	7	3	2	8	4	3	4
기금	합계	18	17	11	16	18	18	13
	법정의무	6	4	5	6	6	5	4
	법정재량	5	6	5	6	7	7	5
	자체	7	15	1	8	6	7	4
	비고(계정수)	26	25	25	16	19	19	16

○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규모와 비중

- 2023년 당초예산기준으로, 부산광역시 특별회계는 3.3조원인데 공기업특별회계가 23.3%인 7,73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16개)는 2조5,489억원으로 76.7%임. 본 과제의 성과분석 대상인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1조 7,117억원과 비교할 때 2023년도의 규모는 48.9% 신장
- 기타특별회계는 최근 10여년동안 계속 숫자가 증대했음. 2010년도에는 12개였으며 2023년도는 16개로 증가했음. 또한 예산규모 및 연도별 증감율 편차가 상당

- 202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비중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1.2조원이며, 이외 1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장기미집행특별회계의 세 가지임.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 각각 21억원과 20억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표 2-6>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규모와 비중의 분포와 추이 (단위 : %, 억원)

	규모				비중				
	2010	2015	2020	2023	2010	2015	2020	2023	
예산합계(일반+특별)	78,502	91,909	125,907	153,277					
일반회계	55,019	68,805	97,088	120,050					
특별회계(합계)	23,483	23,104	28,818	33,227	100.0	100.0	100.0	100.0	
공 기 업	소계	6,365	7,532	8,206	7,738	27.1	32.6	28.5	2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62	3,145	4,501	4,249	11.8	13.6	15.6	12.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12	3,001	3,705	3,489	9.8	13.0	12.9	10.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91	1,386	-	-	5.5	6.0	-	-
기 타	소계	17,117	15,572	20,612	25,489	72.9	67.4	71.5	76.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4	301	263	282	1.1	1.3	0.9	0.8
	경륜사업특별회계	392	305	330	322	1.7	1.3	1.1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57	6,188	9,042	12,214	19.4	26.8	31.4	36.8
	교통사업특별회계	553	599	730	761	2.4	2.6	2.5	2.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3	184	264	119	5.9	0.8	0.9	0.4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0	3	24	21	0.9	0.0	0.1	0.1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7,905	6,486	4,621	4,594	33.7	28.1	16.0	13.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등보상특별회계	-	90	867	1,015	0.0	0.4	3.0	3.1
	유료도로특별회계	421	315	430	365	1.8	1.4	1.5	1.1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75	232	352	367	0.7	1.0	1.2	1.1
	재정비축진특별회계	154	145	36	76	0.7	0.6	0.1	0.2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2	13	37	34	0.0	0.1	0.1	0.1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	-	20	20	-	-	0.1	0.1
	소방특별회계	-	-	3,146	4,309	-	-	10.9	13.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450	448	-	-	1.6	1.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	-	-	541	-	-	-	1.6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112	711	-	-	4.7	3.1	-	-
	2010년기준 신장률	예산합계			95.3				
일반회계				118.2					
기타특별회계				48.9					

자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공시

○ 부산광역시 기금회계의 규모와 비중

- 2023년 당초예산기준으로 18개 기금회계의 운영규모는 1조 3,631억원 임. 2010년 5,884억원과 비교할 때 2023년 운영규모는 131.7% 성장했 음. 이는 같은 기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 성장률 95.3% 보다 상당 수준 높음.

<표 2-7> 부산광역시 기금회계 규모 및 비중의 분포와 추이

(단위 : %, 억원)

	규모				비중			
	2010	2015	2020	2023	2010	2015	2020	2023
합계	5,884	8,007	11,898	13,631	100.0	100.0	100.0	100.0
통합관리기금	2,439	3,047	3,623	0	41.5	38.0	30.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	6,526	-	-	-	47.9
지방채등상환기금	13	371	410	-	0.2	4.6	3.4	-
지역개발기금	-	-	1,336	1,489	-	-	11.2	10.9
남북교류협력기금	32	51	35	38	0.5	0.6	0.3	0.3
재해구호기금	422	422	1,315	457	7.2	5.3	11.1	3.4
재난관리기금	327	497	1,039	603	5.6	6.2	8.7	4.4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	-	40	29	-	-	0.3	0.2
문화진흥기금	29	653	662	771	0.5	8.2	5.6	5.7
체육진흥기금	158	147	234	444	2.7	1.8	2.0	3.3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	-	-	40	-	-	-	0.3
환경보전기금	60	63	80	88	1.0	0.8	0.7	0.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70	303	36	44	4.6	3.8	0.3	0.3
자활기금	-	-	41	45	-	-	0.3	0.3
사회복지기금	88	104	-	-	1.5	1.3	-	-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	100	-	-	334	1.7	-	-	2.4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	122	321	-	-	1.5	2.7	-
청소년육성기금	21	15	-	-	0.3	0.2	-	-
여성발전기금	42	40	-	-	0.7	0.5	-	-
한부모가족지원기금	7	20	-	-	0.1	0.2	-	-
식품진흥기금	121	129	71	76	2.1	1.6	0.6	0.6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63	104	133	124	2.8	1.3	1.1	0.9
중소기업육성기금	740	812	984	1,022	12.6	10.1	8.3	7.5
투자진흥기금	-	378	732	675	-	4.7	6.2	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851	728	805	825	14.5	9.1	6.8	6.1

자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공시

- 2010년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한 기금은 총 25개였는데, 최근 십여 년동안 기금회계에서 개편을 통해 명칭과 내용 변경이 많았고 신설과 폐지 그리고 통합된 경우도 다수 있었음.
- 기금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비중이 각각 47.9%와 10.9%로서 높은데 동 기금들은 재정관리와 용자 목적으로 운영됨. 나머지 기금들은 분야별 재정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성 기금에 해당함.
- 사업성 기금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으며 기금들간 규모 편차가 상당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규모는 825억원인 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8억원 수준임.
- 기금들간 연차별 재원 운용규모 증감 추세도 다양하게 분포돼 있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2010년 851억원에서 2023년도는 약간 감소한 825억원으로 최근 10여년동안 비슷한 규모를 유지함. 이와 달리 문화진흥기금은 2010년 29억원에서 2023년 771억원으로 급증했음.

### 3.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과 추이

#### 1) 부산광역시 회계별 현황

##### ○ 부산광역시 세입예산에서 각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

-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는 약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의 규모가 15% 내외의 점유율을 보임
- 기타특별회계는 2018년 14%대에서 2019년 16%대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2020년부터 최근 4년간은 15% 내외로 안정적임
- 기금은 지난 6년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8~10% 정도의 비중임. 2018년 이후 기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함. 2023년에 아주 소폭 비중이 늘어났으나, 전체적으로 기금의 비중은 8% 초반으로 축소되는 추세임

##### ○ 최근 5년(2018~2022년)간 일반회계 총수입 대비 연구대상 회계 비율

-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비교할 때, 2019년을 제외하면 거의 2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음

- <그림 2-1>의 점선을 보면 추세선이 거의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음.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재원구조가 안정적임을 의미
- 반면, 기금은 일반회계와 비교할 때, 2019년을 제외하고 기금 운용액 비율이 점차 감소함. 2018년 일반회계 총수입 대비 기금 운용액 비율은 14.4%인 반면, 2023년에는 11.4%까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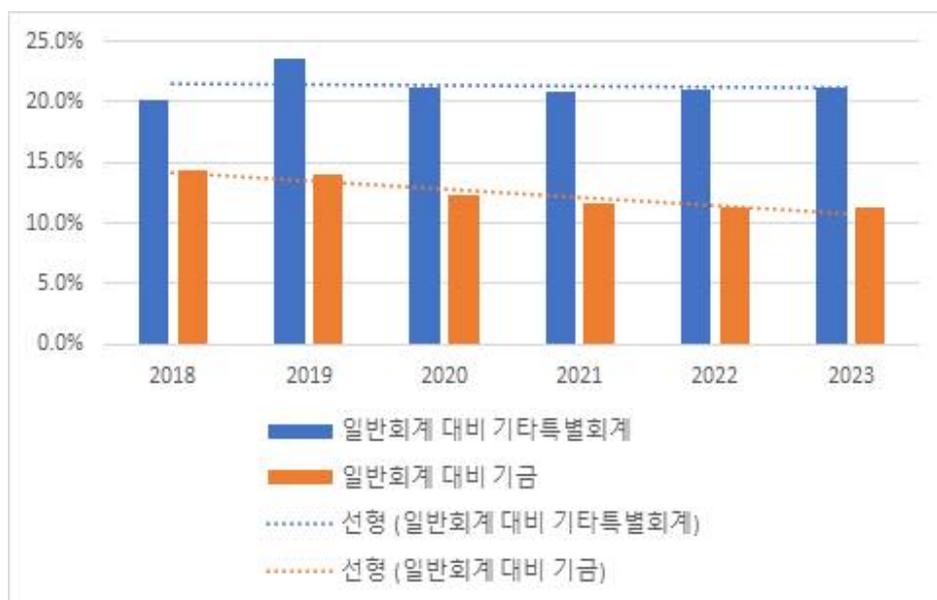
<표 2-8> 부산광역시 예산의 회계별 규모 및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2018	11,999,131	8,373,620	731,628	1,687,416	1,206,467
	100.0%	69.8%	6.1%	14.1%	10.1%
2019	12,901,267	8,825,587	754,869	2,085,663	1,235,148
	100.0%	68.4%	5.9%	16.2%	9.6%
2020	13,780,452	9,708,815	820,596	2,061,247	1,189,794
	100.0%	70.5%	6.0%	15.0%	8.6%
2021	14,511,899	10,341,851	794,578	2,164,575	1,210,895
	100.0%	71.3%	5.5%	14.9%	8.3%
2022	15,529,614	11,128,167	793,258	2,347,599	1,260,590
	100.0%	71.7%	5.1%	15.1%	8.1%
2023	16,690,869	12,005,016	773,806	2,548,922	1,363,125
	100.0%	71.9%	4.6%	15.3%	8.2%

자료: 지방재정365 예산총계 데이터(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산시 내부자료(기금 총액 본예산 기준)

<그림 2-1> 일반회계 총수입 대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비율



## 2)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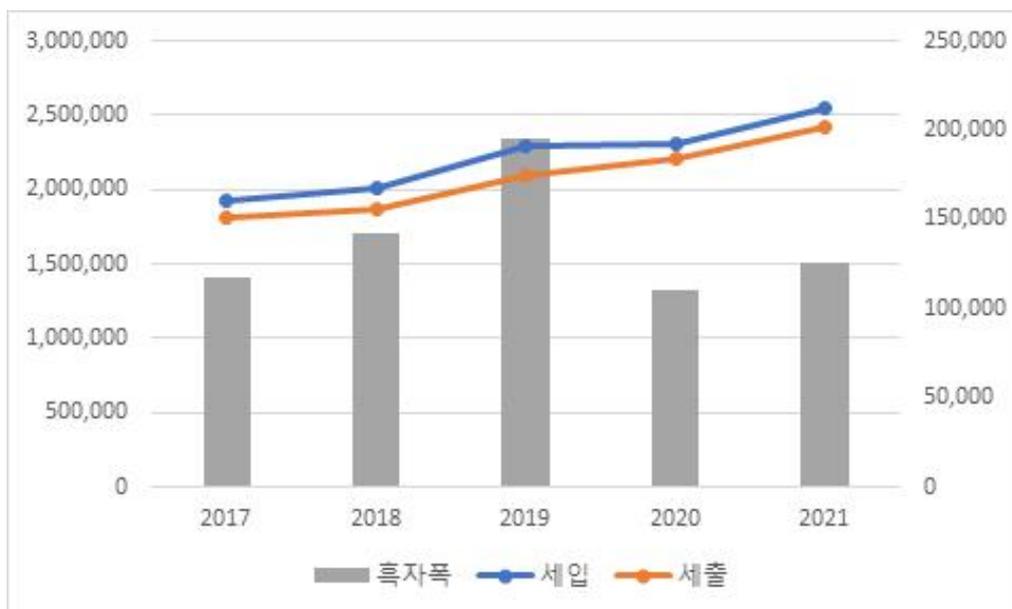
### ○ 기타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현황

-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2017년 1조9,260억원이었으며, 점차 늘어나 2021년에는 2조5,444억 원까지 증가함.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 규모는 2017년 1조8,090억 원이었으며, 점차 늘어나 2021년에는 2조4,185억원까지 증가
- 재정수지에서,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운영하며, 흑자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19년의 1,952억원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총수입 대비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최근 5년간 흑자 상황을 유지하여 회계의 재무건전성에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음

### ○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변화

-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수는 15개에서 2022년 16개로 증가
  - 2018년 근거법및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16개)
  - 2018년 사업완료에 따라 2019년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 폐지(15개)
  - 2021년 근거법및조례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신설(16개)

<그림 2-2> 최근 5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



<표 2-9>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변화

구분	기타특별회계 수	변화
2018	16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신설
2019	15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 폐지
2020	15	-
2021	1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신설
2022	16	-

자료: 각 회계연도별 결산서 및 조례 정리

○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현황

- 기타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에 따라 법정의무과 자체재량으로 구분
  - 법정의무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특별회계
  - 자체재량 : 근거법에서 재량 규정으로 존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특별회계

<표 2-10>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별 현황(2023 현재)

구분	특별회계 수	특별회계 명칭
법정의무	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자체재량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경륜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 정리

- 부산광역시는 2023년 기준으로 9개의 법정의무 특별회계와 7개의 자체재량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법」 제11조의 2,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유료도로법」 제24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와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국토계획법」 제70조제1항, 소방특별회계는 「소방회계법」 제3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법」제5조의4,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법」제84조에 의  
해 설치된 법정 의무 특별회계임.

- 이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가 조례로 설치한 자체재량 특별회  
계에 해당

○ 특별회계 재원 현황

- 기타특별회계는 근거법이나 근거 조례에서 운영 목적에 맞는 재원을 모  
두 가지며, 대부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의 일부로 운영
- 예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97%를 재원으로 운영

<표 2-11>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별 재원 현황(2023)

기금명	재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열요금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따른 수입금, 국비, 일반 회계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등
경륜사업특별회계	발매수입금, 입장료, 사용료, 타회계 전입금 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주차수입, 일반회계 전입금(보통세 징수액의 1천분의 5 이내) 등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담금의 60%), 국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 회계	공영차고지의 사용료 수입금, 타회계 전입금 등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 타회계 전입금 및 용자금, 도시철도채권 발행 수입금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등보상 특별회계	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 범위
유료도로특별회계	통행료 수입(광안대교), 일반회계 전입금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 회계	일반회계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의 97%(징수 교부금 3% 제외) 등
재정비축진특별회계	재정비축진지구 보상반환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비 등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기반시설설치비용, 일반회계 전입금 등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예산 수입액) 등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 제외) 97%
소방특별 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97%), 국비, 소방안전교 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국비, 도시공사이익배당금의 40%,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 정리

### 3) 부산광역시 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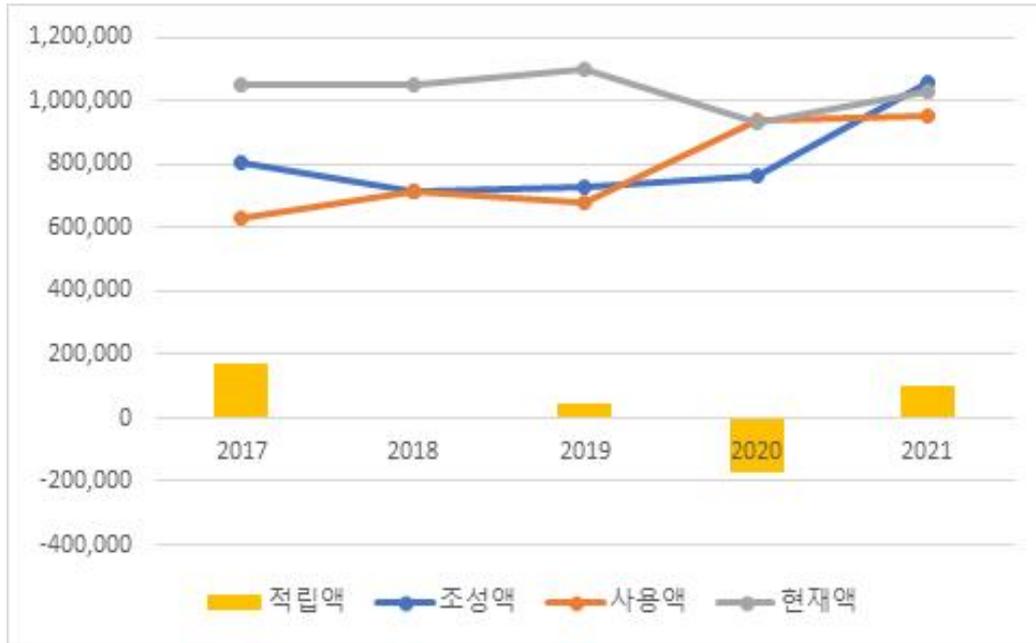
####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현황

- 기금 적립액 규모는 2017년 1,746억원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2021년에는 1,009억원까지 감소. 특히 2018년과 2020년에는 적립액이 마이너스였는데, 기금의 수입을 웃도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 2018년에는 기금의 수입이 7,128억원인 반면, 지출은 7,133억원으로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함. 2020년에는 기금의 수입이 7,668억원인 한편, 지출은 9,373억 원으로 1,705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
- 부산광역시 기금의 조성액은 일반회계 총수입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내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이 2년 동안 발생
  - 대부분의 기금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연차별로 지출과 수입간 차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세입 규모를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하면 사업운영의 재정안정성과 계획성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

#### ○ 부산광역시 기금의 변화

-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 기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부산광역시 기금의 수는 18개(27개 계정)에서 2022년 18개(25개 계정)로 동일하나 계정 수는 감소
- 2018년에는 중소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
- 2019년에는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계정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 장애인계정, 노인계정을 일반회계로 편성
- 20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신설
- 부산광역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신설

<그림 2-3> 최근 5년 부산광역시 기금의 현재액 규모 (단위 : 백만원)



<표 2-12> 부산광역시 기금 및 계정의 변화

구분	기금 수	계정 수	변화
2018	18	27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펀드계정 추가
2019	18	24	사회복지기금(4계정)이 자활기금(1계정)으로 변경되고 기존 3계정은 일반회계로 통합됨
2021	18	25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등상환기금 폐지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2계정)과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신설
2022	18	26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 추가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 정리

○ 부산광역시 기금의 설치 현황

- 2023년 기준, 부산시 기금은 18개이며 계정으로는 26개가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설치 근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법정재량기금과 자체기금으로 구분
  - 법정의무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기금
  - 법정재량기금은 개별 법률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기금

- 자체재량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자체가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기금

<표 2-13> 부산광역시 기금의 설치 근거별 현황(2023 현재)

구분	기금 수	계정 수	기금명(계정명)
법정의무기금	6	6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법정재량기금	5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문화진흥기금,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재량기금	7	9	남북교류협력기금,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집단에너지시설기금, 투자진흥기금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 정리

- 부산광역시는 2023년 기준으로 6개의 법정의무기금(6개 계정), 5개의 법정재량기금(11개 계정)과 7개의 자체기금(9개 계정)을 설치·운용 중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제14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에 의해 설치된 법정의무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제16조,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제19조,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의 재량조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된 법정재량기금
  - 법정의무기금과 법정재량기금을 제외한 타 기금은 부산광역시가 조례로 설치한 자체재량기금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관리 기금, 융자성 기금, 적립성 기금으로 구분
  - 사업관리 기금 :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

- 용자성 기금 :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용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
- 적립성 기금 :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
- 대부분의 지자체 기금은 사업관리, 용자, 적립 등 복수의 기능을 수행. 부산광역시 기금의 상당 수는 특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 기금
  - 용자성 기금에는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영업자), 자활기금(저소득시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타 회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계정·사회적경제계정·펀드투자계정(소상공인·중소기업), 문화진흥기금 영상영화진흥계정(영상영화인),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관광업종사자)의 6개 기금(9개 계정)이 포함
  - 적립성 기금에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업준비금 계정·손실보전금계정의 3개 기금(4개 계정)이 포함

#### ○ 기금별 재원 현황

- 부산광역시 기금 중 자체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단 2개임
  - 식품진흥기금의 자체재원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자체 재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 부산광역시 기금 중 9개는 자체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입의 구조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자체 재원을 전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자체 재원인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음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자체 재원인 반입수수료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함. 반입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기금의 수입으로 직접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후, 기금으로 전출됨
  -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연료화시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표 2-14> 부산광역시 기금별 자원 현황(2023)

기금명	자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타 회계·기금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원의 발행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 지방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 기금운용 수익 등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등
문화진흥기금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경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매출액의 11/1000)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시 출연금, 기부금 및 후원금, 기금 운용수익금
환경보전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연료화시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적립금 이자수입 등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시 출연금, 기금운영 이자수입, 그외수입 등
자활기금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양성평등·출산지원 및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0%, 적립금 이자수입
중소기업육성기금	시 출연금,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펀드회수금 등
투자진흥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공유재산 임대료,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이자수입 등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 정리

-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음
-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 평균액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활기금,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을 통해 수입을 확보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11개 기금 계정은 자체 재원을 보유하거나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7개 기금 계정은 자체 재원의 성격을 갖는 수입이 없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일부 융자성 기금은 원리금과 이자 상환금을 통해 수입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융자 수요가 증가할 경우 기금의 건전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부산광역시 기금별 타 회계 의존율(재정자립도)

-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 회계의존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90% 미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최근 5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90%에 미달하는 부산광역시 기금(계정)은 15개로 전체 기금(계정)의 58%(15/26)에 해당
- 특히,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사업준비계정), 체육진흥기금(손실보전금계정),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계정)의 6개 기금(계정)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타 회계 의존율이 10%를 초과(재정자립도가 90% 미만)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2-15> 부산광역시 기금별 재정자립도(최근 5년)

기금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0	100	100	100	100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개발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60	78	100	100	88
재해구호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재난관리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84	60	50	50	55	60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100	100	66	42	97	81
문화진흥기금(영화영상진흥계정)	80	88	100	100	100	94
체육진흥기금(사업준비계정)	17	19	61	18	10	25
체육진흥기금(손실보전금계정)	21	25	64	14	0	25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100	100	100	100	61	92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	-	-	0.2	48	24
환경보전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자활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	85	100	100	100	100	97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	70	71	100	100	100	88
양성평등·출산지원 및(청소년)육성기금	88	90	89	100	100	93
식품진흥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집단에너지시설기금	84	68	86	89	96	85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	-	-	-	0	0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계정)	76	80	80	72	69	75
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투자계정)	61	86	92	69	53	72
투자진흥기금	58	100	100	100	100	1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 정리

#### 4. 특광역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 비교

1) 기타특별회계·기금 현황 분석 및 비교(2023년 본예산 기준)

○ 기타특별회계 : 설치목적(법정/비법정)별, 재원 조성 형태별

- 2023년 67개의 특·광역시(부산제외) 기타특별회계가 설치·운영

- 특·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평균은 11개임. 특·광역시별로 차이가 있음 (인천 15개, 울산 8개)
- 재원 조성 형태별로도 특광역시 기타특별회계별로 차이가 있음. 자체 수입,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 특광역시 기타특별회계 수는 최소 8개에서 최대 15개까지 분포(부산 제외)

- 서울 10개 : 법정기타특별회계는 7개이고 비법정기타특별회계는 3개
- 대구 9개 : 법정기타특별회계는 7개이고 비법정기타특별회계는 2개
- 인천 15개 : 법정기타특별회계는 7개이고 비법정기타특별회계는 8개
- 광주 12개 : 법정기타특별회계는 8개이고 비법정기타특별회계는 4개
- 대전 13개 : 법정기타특별회계는 10개이고 비법정기타특별회계는 3개
- 울산 8개 : 법정기타특별회계는 4개이고 비법정기타특별회계는 4개

<표 2-16> 서울특별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전철, 광역도 로건설</li> <li>●환승주차장및공영 차고지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 한 특별법 제11조의 7</li> <li>●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 금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 12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귀속분</li> <li>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li> <li>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li> <li>4.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li> </ol>	법정
교통사업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교통체계개선</li> <li>●주차장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li> <li>●주차장법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설치등),</li> <li>●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li> <li>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li> <li>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li> <li>4. 1993년 7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와 제3호 중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징수분</li> <li>5.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li> <li>6. 국고보조금</li> <li>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li> <li>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으로부터의 차입금</li> <li>10. 그 밖의 수입금</li> </ol>	법정
균형발전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체육시설 지역균형발전 지원</li> <li>●생활서비스시설 지역균형발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li> <li>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li> </ol>	비법정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3.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도시개발 사업특별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사업</li> <li>•공원·녹지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특별회계 설치)</li> <li>•도시개발조례제60조</li> <li>•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2001.6.15제정)</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li> <li>2. 정부의 보조금</li> <li>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li> <li>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li> <li>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li> <li>5.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li> <li>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li> <li>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li> <li>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li> <li>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li> <li>10. 차입금</li> <li>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li> </ol>	법정
도시철도 건설사업 비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 경전철건설</li> <li>•공채매각대금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26조</li> <li>•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li> <li>2.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li> <li>3. 지방채 수입금</li> <li>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li> <li>5.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li> <li>6. 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li> <li>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li> </ol>	비법정
소방특별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li> <li>•서울특별시소방특별회계운영에관한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서울특별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li> <li>2.소방사무의외업무수행하기위한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li> </ol>	법정
의료급여 기금특별 회계	의료급여수급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li> <li>•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고보조금</li> <li>2.서울특별시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li> <li>3.「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한다)제21조에따라상환받은대지급금</li> <li>4.법제23조에따라징수한부당이득금</li> <li>5.법제29조에따라징수한과징금</li> <li>6.결산상잉여금(자치구분포함)및그밖의수입금</li> </ol>	법정
주택사업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li> <li>•재개발및주거환경개선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특별회계 설치)</li> <li>•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li> <li>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li> <li>3.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li> <li>4. 일반회계 전입금</li> <li>5.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li> <li>6. 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li> <li>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li> <li>8. 「주택법」 제20조제2항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li> <li>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li> </ol>	비법정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학교용지 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li> <li>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li> <li>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ol>	법정
한강수질 개선 특별회계	상수원 퇴적물 관리와 이용부담금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li> <li>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제7217호)</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li> <li>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차입금</li> <li>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li> </ol>	법정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세입세출예산서

<표 2-17> 대구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 제11조의7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징수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담금</li> <li>법제10조제1항에따른국고보조금및법제10조제2항에따른분담사업비</li> <li>지방채및기금등으로부터의차입금</li> <li>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과그밖의수입금</li> </ol>	법정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li> <li>주차장관리수탁차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및제13조제2항관련)</li> <li>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관련)</li> <li>「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따른과징금</li> <li>「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따른과징금</li> <li>「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따른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li> <li>국고보조금</li> <li>다른회계로부터의전입금</li> <li>그밖에법령또는조례에따른교통관련수입&lt;#정2018. 10. 1.&gt;</li> <li>그밖의접수입</li> </ol>	법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보조금 및 정부용자금</li> <li>다른회계및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융자금</li> <li>지방채발행수입금</li> <li>외국차관및국내차입금</li> <li>수탁사업부담금</li> <li>도시철도법의규정에의한역세권개발사업에따른수입금</li> <li>회계소속재산의매각대금및임대수입금</li> <li>회계운영에따른기타수입금</li> </ol>	비법정
산업단지특별회계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대구광역시산업단지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li> <li>「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따른재건축부담금중지방자치단체귀속분</li> <li>「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제5항에따른건축사업으로 발생한분양수익</li> <li>「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15에따른개발이익재투자유환수입금</li> <li>「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li> <li>일반회계전입금&lt;제2호에서이동&gt;</li> <li>사업수수금&lt;제3호에서이동&gt;</li> <li>국비보조금&lt;제4호에서이동&gt;</li> <li>지방채및차입금</li> </ol>	비법정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10. 산업단지특별회계자금의용자회수금, 이자수익금및그밖의수익금 11. 그밖에목적사업을위한특별회계에서의전입금	
소방특별회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소방재정지원 및 사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대구광역시소방특별회계운영에 관한조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분지역지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	법정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대구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지역지원시설세중특정지역분및특정시설분의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징수교부금은제외한다	법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의료급여법」 제25조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	1. 국고보조금 2. 대구광역시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3.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상환받은대지금 4. 법제23조에 따라징수한부당이득금 5. 법제29조에 따라징수한과징금 6. 결산상잉여금(자치구분포함) 및그밖의수입금	법정
재정비축진특별회계	재정비축진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도시재정비 축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도시재정비축진조례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보조금 3. 「재건축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재건축부담금중시(市)귀속분의100분의30에 해당하는금액 4.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2. 3. 30 조례 제 4375호) 5. 차입금 6. 특별회계자금의용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법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대구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 2. 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가산금 3. 개별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법정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세입세출예산서

<표 2-18> 인천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및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조례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 2. 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가산금 3. 다른회계또는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예수금 4. 기부금 5. 기타수입금	법정
소방특별회계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함	•소방재정지원 및 사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인천광역시소방특별회계운영에 관한조례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지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법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의료급여법」 제25조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	법정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함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 2. 관할광역자치단체지원금 3. 이자등세의수입 4. 수도권매립지관련공유재산의매각·임대수입금및그밖의수입금	비법정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수질개선특 별회계	수질개선사업과 주 민지원사업 등에 드 는 사업비를 확보하 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li> <li>인천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li> <li>일반회계및다른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li> <li>「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li> <li>차입금</li> <li>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자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li> </ol>	법정
공공폐수처 리시설특별 회계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 적인 운영을 위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li> </ul>	부담금,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법정
오류지구토 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 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제32조제2항에 따 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를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li> <li>인천광역시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li> </ul>	보유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	비법정
미전지구토 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 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제32조제2항에 따 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미전지구 토지구획정리를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li> <li>인천광역시미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li> </ul>	보유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	비법정
불로지구토 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 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제32조제2항에 따 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를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li> <li>인천광역시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li> </ul>	보유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	비법정
도시교통사 업특별회계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 「주차장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교통안전법 」 및 「도로교통법 」에 의한 수입과 지 출관리를 명확히 하 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li> <li>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li> <li>「주차장법」 제8조및제13조에따른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li> <li>「주차장법」 제24조의2에따른노외주차장관리위반과징금</li> <li>「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따른시설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li> <li>「주차장법」 제30조에따른노외주차장설치운영위반과태료</li> <li>「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따른교통유발부담금</li> <li>「교통안전법」 제65조에따른교통안전관리비위반과태료</li> <li>국고보조금</li> <li>타회계로부터의전입금</li> <li>「인천시설공공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에따른사업의결신잉여금수입</li> <li>「도로교통법」 제160조에따른전용차로위반과태료</li> <li>「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따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li> <li>그밖의법령또는조례의규정에의한교통관련수입</li> </ol>	비법정
광역교통시 설특별회계	광역교통사업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li> <li>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징수에관한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li> <li>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0조제1항에따른국고보조금및법제10조제2항에따른분담사업비</li> <li>지방채및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차입금</li> <li>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과그밖에수입</li> </ol>	비법정
도시철도사 업특별회계	인천광역시가 시행 하는 도시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철도법」, 「지방차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채정법」 제9조제2항</li> <li>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li> <li>다른회계및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융자금</li> <li>지방채발행수입금</li> <li>외국차관및국내차입금</li> <li>수탁사업부담금</li> <li>「도시철도법」에따른역세권개발사업으로발생한수입금</li> <li>회계소속재산의매각대금및임대수입금</li> <li>회계운영에따른그밖의수입금</li> </ol>	법정
도시개발특 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을 촉 진하고 예산을 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li> <li>인천광역시도시개발조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li> <li>정부의보조금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개발이익제투</li> </ol>	법정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적으로 집행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를위하여납입된금액</li> <li>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li> <li>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li> <li>5.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li> <li>6. 「수도권장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li> <li>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li> <li>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li> <li>9.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제1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li> <li>10. 차입금</li> <li>11.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li> </ul>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가의 대부분</li> <li>2.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3. 그 밖의 수입금</li> </ul>	비법정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 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역지원시설세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li> <li>2.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 용자금, 부담금 및 개발이익금 등</li> <li>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li> <li>5.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li> </ul>	비법정

자료: 차치법규정보시스템, 세입세출예산서

<표 2-19> 광주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고보조금</li> <li>2. 도비보조금</li> <li>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기금상환금</li> <li>5. 법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li> <li>6.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li> </ul>	법정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li> <li>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4. 차입금</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li> </ul>	법정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풍영정천 수량 확보 사업 협약에 따라 내공사에서 예치한 위탁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풍영정천 건전화 방지 및 유지용수 공급사업의 부담금</li> <li>2. 하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 위탁금</li> <li>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li> </ul>	비법정
해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한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 광주광역시해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비자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그 밖에 접수입</li> </ul>	법정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광주광역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li> <li>2.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li> <li>3.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수입금</li> <li>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5. 차입금</li> <li>6. 기타 회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li> </ul>	비법정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 교통체계의 개선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법제60조에 따른 과태료 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7.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8.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9.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등 보관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금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 과태료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3. 국·도비보조금 1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법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7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중 광주광역시 귀속분 2. 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분담사업비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법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법정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를 조성,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1.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산업진흥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자기상승분리기부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익금	법정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1. 광주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5. 펀드 투자계정 출자회수금	비법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용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용자금 3. 지방채 발행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회계운영에 따른 기타 수입금	비법정
소방특별회계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사·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소방분 지역지원시설세의 100분의 90 이상의 금액	법정

자료: 차치법규정보시스템, 세입세출예산서

<표 2-20> 대전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경부고속철도 변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대전광역시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1. 사업위탁금 2. 일반회계전입금 3. 그밖의수입	비법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및특별회계조례	1. 임대수입 2. 그밖의수입금	법정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전광역시 교통사업 관리와 운영을 위함(도로사업, 교통체계 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1. 「주차장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금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제35조에 따른혼잡통행료 3. 법제36조에 따른교통유발부담금 4. 법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과태료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전용차로위반과태료 5의2. 「어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및제94조에 따른과징금및과태료 6. 국고보조금 7. 다른회계로부터의전입금 8. 법령또는조례에 따른통행료등교통관련수입 9. 그밖의수입금	법정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보조금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개발이익재투자위하여납입된금액 3. 제62조에 따른도시개발채권의발행으로 조성된자금 4. 제70조에 따른수익금및집행잔액 5. 제85조에 따라부과·징수된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중해당시·도의조례로 정하는 비율의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비율의금액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수익금 9. 「지방세법」제112조(같은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징수액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금액 10. 차입금 11. 해당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밖의수익금	법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1. 「도시철도법」제19조 각 호의 자금 2. 특별회계소속재산의매각대금및임대수입금 3. 특별회계운용에 따른수입금	비법정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	대전 도안지구2단계의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과 그밖의수입금	법정
산업단지특별회계	대전광역시가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및산업단지특별회계조례	1. 용지분양대금 2.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3. 그밖의수입금	법정
소방특별회계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함	소방재정지원 및 사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대전광역시소방특별회계조례	대전광역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 이상의 금액	법정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수질개선특 별회계	금강수계의 수질개 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1. 국고보조금 2. 그밖의수입금	법정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	대전광역시 의료급 여기금의 수입과 지 출을 명확히 하기 위함	의료급여법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1. 국고보조금 2. 일반회계전입금 3. 그밖의수입금	법정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재정비축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 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조례	재산세의 20퍼센트	법정
주택사업특 별회계	주택사업자금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함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 치 및 운용 조례	1. 다른 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보조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차입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차입금 6. 특별회계에속하는재산의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회수금, 이자수익금및그밖의수입	비법정
학교용지부 담금특별회 계	「학교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의4에 따른 학 교용지부담금을 위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의4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및학교 용지부담금특별회계조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3. 그밖의수입금	법정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세입세출예산서

<표 2-21> 울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광역교통시 설특별회계	울산광역시 광역교 통사업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 계설치에관한조례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0조제1항에따른국고보 조금및같은조제2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과그밖의수입금	법정
교통사업특 별회계	교통사업 관리 및 운용을 위한(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도시교통관리 및 운 영사업,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 교통조사 및 연구사 업,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도시교통장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1. 「주차장법」 제8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19조에따른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따른노외주차장관리유번비징금 4. 삭제 <2012-08-08> 5. 주차장사업관련국고보조금과그밖의수입 6. 법령또는조례에따른도로통행료수입 7. 「도시교통장비촉진법」 제36조에따른교통유발부담금 8. 울산시설공단운영에따른잉여금 9. 「아파트등차운수사업법」 제88조및제94조에따른과징금및과태료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및제70조에따른과징금및과태료 11. 「자동차관리법」 제74조및제84조에따른과징금및과태료 12. 「교통안전법」 제65조에따른과태료 1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따른과태료 14.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에따른과태료 15. 다른회계로부터의전입금 16. 도시교통사업관련국고보조금 17. 전년도수입 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따른과태료 19.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 항제1 호에따른보통세장수액의100분의1 20. 그밖에교통사업관련집수입	법정
소방특별회 계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	-소방재정지원 및 사도 소방특별 회계 설치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법정

	옹의 독립성 강화를 위함	-울산광역시소방특별회계운용에 관한조례		
울산경제자유구역특 별회계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경제자유 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설 치및운용조례	1. 국비보조금 2. 일반회계전입금 3. 용자매각수입금등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한사업수 입금등 4. 경제자유구역내공공시설임대료및그밖에사용료·수수료·수입금등 5.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경제자유구역의활성화를위해세입 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항목	비법정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금을 합리 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	법정
일반산업단 지조성특별 회계	울산광역시의 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함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 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전입금 3. 국비보조금 4. 사업선수금 5. 지방채 6. 그밖의수입금	비법정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 설세특별회 계	지역자원시설세의 수 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 등의 육성을 위함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3. 특별회계의운영에따른수입금	비법정
학교용지부 담금특별회 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 비를 조달하고, 부담 금의 효율적인 관리 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의4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운영에 관한조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3. 그밖의수입금	비법정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세입세출예산서

### ○ 기금 : 설치형태(법정의무/법정재량/임의)별, 재원 조성 형태별

- 2023년 특·광역시(부산제외) 기금은 92개, 계정은 103개 설치·운영
  - 특·광역시 기금 평균은 15개이며 계정으로서는 17개가 설치·운영. 특·광역시별로 차이가 있음(대전 18개, 대구 10개)
  - 재원 조성 형태별로도 특광역시 기금별로 차이가 있음.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로 기금이 다양하게 나타남
- 특광역시의 기금 수는 최소 11개에서 최대 18개까지 분포
  - 서울은 17개이며 계정으로서는 25개 : 계정기준으로 법정의무기금 4개, 법정재량기금 6개, 자체기금 15개
  - 대구는 11개이며 계정으로서는 25개 : 계정기준으로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5개, 자체기금 1개
  - 인천은 16개 : 법정의무기금 4개, 법정재량기금 4개, 자체기금 8개
  - 광주는 18개이며 계정으로서는 19개 : 계정기준으로 법정의무기금 6개, 법정재량기금 7개, 자체기금 6개

- 대전은 18개이며 계정으로서는 19개 : 계정기준으로 법정 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7개, 자체기금 7개
- 울산은 13개 : 법정 의무기금 4개, 법정재량기금 5개, 자체기금 4개

<표 2-22> 서울특별시 기금 현황(2023)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원 확보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진흥기금 지원계정	위키 시 관광업계 지원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진흥기금 자계정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개관을 위한 비용 적립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의 추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	자체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	자체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자체기금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자체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법 제9조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지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	자체기금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의 50%	자체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기금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 등	자체기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	민간용자금 회수, 예치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체기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자체기금
사회투자기금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 마련	서울특별시 사회투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민간용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성평등기금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법정재량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서울특별시 식품진흥 기금 조례	출연금, 부담금,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전입금(폐기물 반입료, 특별출연금, 난방비 등),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의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 등	법정의무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육성계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포함) 등	법정재량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법정재량기금

회계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비고
기금 투자계정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투자지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차입금, 펀드투자 회수금 등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 수입금	자체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	서울특별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법정재량기금
통합재정안정 회기금 통합계정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서울특별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및 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 등	법정재량기금
하수도사업회 전기금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법정재량기금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금운용계획

<표 2-23> 대구광역시 기금 현황(2023)

기금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설치구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정비구역내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 시설 설치 사업비 보조 또는 용자 지원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구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지방소비세 중 3% 또는 같은법제112조에따라부과 징수되는재산세중10%, 국유지매각대금20%(공유지30%),이자수입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식품위생법 및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19조및 제20조에따라징수한회차징금및기금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법정의무기금
재난본보기금	재난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와 재해복구 지원으로 이재민의 생활조기 안정	재해구호법 및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환경자원시설(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환경자원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반회계 출연금(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포함), 이자수입	법정의무기금
자활기금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	법정재량기금
지역개발기금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추진사업 등의 효율적 자금운영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지역개발공채 발행 수입 및 기금운용수입 등	법정재량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등)	법정재량기금
통합재정안정 회기금(통합계정)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른 기금과 타 회계로부터의 예탁금, 기금 용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 수입금 등	법정재량기금
하수도사업회 전기금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 도모	지방공기업법,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대구광역시하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법정재량기금
청사건립기금	대구광역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금운용계획

<표 2-24> 인천광역시 기금 현황(2023)

기금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설치구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임대주택 수입금, 지방소비세 및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국민영양향상 등 식품 산업발전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처분에 의한 수익 및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금 등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에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기금재해발생 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입	법정의무기금
양성평등기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한부모가족 과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반회계 전입금,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법정재량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정부차입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법정재량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주민복지증진사업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예금이자, 용지활동에 따른 회수 이자 등 기금운용 수익금	법정재량기금
통합관리기금	사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용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일반회계전입금,개별기금및특별회계여유재원에탁금	법정재량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	자체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기금운용 수익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자체기금
분노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가좌분노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개선	인천광역시 분노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조례	기타사용료(분노처리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효율적인 추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자체기금
약취관리기금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약취 효과적관리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 (2020: 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약취방지시설기금: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사업장약취효과적관리,시민건강보호및체감환경개선)	인천광역시 약취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2018: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약취방지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연금 및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 (2018: 한국토지주택공사의출연금)	자체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식배당금 등	자체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자체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및 복지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금액	자체기금

자료: 차치법규정보시스템, 기금운용계획

<표 2-25> 광주광역시 기금 현황(2023)

기금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설치구분
도시및주거 환경 정비기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금을 확보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조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및 징 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지방소비세의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개발부담 금중지방자치단체구속분의50% ·정비구역안의공유주택매각대금의30%등	법정의무기금
상무소각장주 변영향지역주 민지원기금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대 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광 주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폐 기물 반입수수료의 10%, 가산금, 이자 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 금관리·운용조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식품위생법제82조,제83 조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에따 리징수한피징금등	법정의무기금
위생매립장주 변영향지역주 민지원기금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광 주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 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 가산 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법정의무기금
재난복리기금	재난복리에 소요되는 비용 총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광주광역시 재난복리기금 운용 관 리 조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 기 금운용수입, 기타 수입금 등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	재해구호법 제14조,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 금 관리 조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5/1000, 기 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법정의무기금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영기금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금 조례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공공기여금	법정재량기금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등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광주광역시 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금, 기타 수익금	법정재량기금
지역개발기금	주민 복지증진과 지방공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공업법제19조, 광주광역시지역 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및 융자금원리금 회수 및 예금이자 등 기 금의 운용 수익금	법정재량기금
청소년육성 기금	지역청소년 건전 육성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광주광역시 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출연금, 이자수입금	법정재량기금
통합재정안정 화기금(재정 안정·회계계정)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광주광역시기금관리및통합재정안정 화기금설치조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법정재량기금
통합재정안정 화기금(통합 계정)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 원 또는 예 처금의 통합적 관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6조, 광주광역시기금관리및통합재정 안정화기금설치조례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 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 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등	법정재량기금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소 득증대 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 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	법정재량기금
남북교류협력 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 익금	자체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업인 복지증진, 소득증대사업 지원, 농업 농촌 발전 도모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자체기금
사회복지기금	지활산업의 원활한 추진, 노인복 지증진, 저 소득 한부모가정의 생 활안정 및 복지사업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 용등에 관 한 조례(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한부모가족 통합 운용)	국가,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자체기금
사업예술단체 진흥기금	예술단체의 육성발전 및 공연의 활 성화	광주광역시사업예술단체 설치 조례	공연출연료, 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장애인복지 기금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9조, 광주광역시 장 아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국사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 타 수익금	자체기금
체육진흥기금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단체 출연금, 체육회 기금, 기금운 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자체기금

자료: 차치법규정보시스템, 기금운용계획

<표 2-26> 대전광역시 기금 현황(2023)

기금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설치구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정비사업 사업비 보조 용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사비전입금(지방소비세의 3%), 기금운용 수익금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 사업시행	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익금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의 예방·수습과 긴급구조사업비 조성	재난관리기금조례	사비전입금(지방세 중 보통세 최근 3년 평균 수입결산 연액의 1/100), 기금운용 수익금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자연재해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 적립액) :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된재해구호기금누적집행잔액이최근 3년동안의「지방세기본법」에따른보통세의수입결산액연평균액의1천분의30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15조제1항(1천분의5에 해당하는금액을적립)에도불구하고해당연도의최저적립액이하로적립할수있다	법정의무기금
주민지원기금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소득향상 지원	폐기물 관리조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법정의무기금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지원	양성평등기본조례	사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법정재량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리용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사비전입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펀드 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법정재량기금
지역개발기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조달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지역개발체권의 발행 및 용자사업	법정재량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발전 도모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금, 사비전입금 및 지역개발 지역환원금(공공기여금) 등	법정재량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우리고장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기본 조례	사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법정재량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	기금관리기본 조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법정재량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	기금관리기본 조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운용 수익금	법정재량기금
과학기술육성기금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 개발특구 육성	과학기술진흥 조례	사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자체기금
근로복지기금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 근로자 복지증진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비전입금, 기금운용의 이자수입금	자체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원 이- 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사비전입금, 기금 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녹지기금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 휴식공간 제공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사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자체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업 인력육성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발전기금 조례	사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자체기금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경영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 출연금, 지역환원금, 이자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자체기금
체육진흥기금	대전 체육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	체육진흥 조례	사비전입금과 체육회 조성금(수익사업),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자료: 차치법규정보시스템, 기금운용계획

<표 2-27> 울산광역시 기금 현황(2023)

기금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설치구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총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소비세의 3%,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출연금(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 및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5/1,000), 이자수입 등	법정의무기금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 및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확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협약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법정재량기금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사업 지원	양성평등기본 조례	공공예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법정재량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법정재량기금
지역개발기금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자금 조달	지역개발기금 조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법정재량기금
통합재정안정회기금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을 자 등 효율적으로 활용 및 지방채 상환 등	통합재정안정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 (재정안정회계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등	법정재량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농어촌육성기금	농어민,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등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자체기금
대외협력기금	다른지방자치단체(울산 자치구군 제외)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 교류와 우호협력 증진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 (재정안정회계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등	자체기금
박물관및미술관기금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유물, 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박물관및미술관기금 조례	시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탁금,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료·관람료 수입 등	자체기금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금운용계획

## 2) 최근 5년간 기타특별회계·기금의 변동 사례 분석

### ○ 변동사례

- 특·광역시(부산제외) 기타특별회계는 최근 5년간 7개 폐지, 4개 신설
  - 특·광역시 평균 1개가 폐지되고, 1개 신설
  - 특광역시별로 차이가 있음(대구 5개 폐지, 0개 신설)
- 특·광역시(부산제외) 기금은 최근 5년간 23개가 폐지되고, 15개 신설됨
  - 특·광역시 평균 4개가 폐지되고, 3개 신설
  - 특광역시별로 차이가 있음(대구 10개 폐지, 2개 신설)

### ○ 기타특별회계

- 서울특별시는 기타특별회계가 최근 5년간 2개가 신설
  - 신설: 균형발전특별회계(202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2020)
- 대구광역시는 기타특별회계가 최근 5년간 5개가 폐지
  - 폐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2019),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2019),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2022), 기반시설특별회계(2022),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2022)
- 인천광역시는 최근 5년간 2개의 기타특별회계가 폐지
  - 폐지: 재난안전특별회계(2019), 기반시설특별회계(2020)
- 광주광역시는 최근 5년간 기타특별회계 변동이 없음
- 대전광역시는 최근 5년간 1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신설
  - 신설: 재정비축진특별회계(2022)
- 울산광역시는 최근 5년간 1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신설됨
  - 신설: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2023)

### ○ 기금

- 서울특별시는 기금이 최근 5년간 4개 폐지되고, 4개 신설
  - 폐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2019), 재정투융자기금(2020), 감채기금(2020), 지역개발기금(2021)
  - 신설: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계정

(2020), 공무원주거안정기금(2021), 하수도사업회전기금(202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2018)

- 대구광역시는 기금이 최근 5년간 10개 폐지되고, 3개 신설
  - 폐지: 지방채상환기금(2020), 통합관리기금(2020), 남북교류협력기금(2022), 사회복지기금(2022), 인재육성기금(2022), 양성평등기금(2022), 체육진흥기금(2022), 시립예술단진흥기금(2022), 메디시티기금(2022), 농촌지도자육성기금(2022)
  - 신설: 하수도사업회전기금(20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2021)
- 인천광역시는 기금이 최근 5년간 1개 폐지되고, 2개 신설됨.
  - 폐지: 지방세발전기금(2020)
  - 신설: 약취관리기금(2018),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2020)
- 광주광역시는 기금이 최근 5년간 3개 폐지되고, 3개 신설됨.
  - 폐지: 지방채상환기금(2019), 재정안정화기금(2020), 통합관리기금(2020)
  - 신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20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2021), 공공시설등의설치운용기금(2021)
- 대전광역시는 기금이 최근 5년간 2개 폐지되고, 3개 신설
  - 폐지: 통합관리기금(2020), 재정안정화기금(2020)
  - 신설: 지역균형발전기금(20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계정(2020),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2023)
- 울산광역시는 기금이 최근 5년간 3개 폐지되고, 1개 신설됨.
  - 폐지: 통합관리기금(2020), 지방채상환기금(2020), 남북교류협력기금(2022)
  - 신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2020)

### 3) 기타특별회계·기금 현황 및 변동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 비효율성과 방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 필요

- 최근 지방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특·광역시는 기타특별회계·기금 개혁을 통하여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기금·특별회계·일반회계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
  - 기타특별회계는 최근 5년간 7개가 폐지됨
  - 기금은 최근 5년간 23개가 폐지됨
-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위해 노력

- 따라서, 일반회계로 대체가능한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시기적으로 혹은 관리효율 측면에서 쟁점이 잠재된 기금들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통합적 재정사업 관리 및 자원배분 접근이 요망

○ 기타특별회계·기금 설치에서 법적 근거의 엄격성 유지 필요

- 특·광역시외의 기타특별회계는 64.2%가 법정기타특별회계이고, 35.8%가 비법정기타특별회계
- 특·광역시의 기금에서 27.2%가 법정의무기금, 33%가 법정재량기금, 39.8%가 자체기금임. 즉, 60.2%가 법정기금
- 따라서,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기타특별회계·기금 설치에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재정 개혁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특·광역시의 특성 유지나 지역별 특성을 위해서 기타특별회계·기금이 유지되거나 신설
  - 기타특별회계는 최근 5년간 4개 신설
  - 기금은 최근 5년간 15개 신설
  - 특·광역시의 특성에 의해 유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광주), 통합재정안정화(서울) 등
  - 지역별 특성에 의해 유지: 재정비축진특별회계(대전), 산업단지특별회계(대구),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인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대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서울) 등
- 따라서, 재정환경과 지역적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관리 수단으로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설치 및 체계적 성과관리 노력 강화 필요

### Ⅲ.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응답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분포

##### ○ 설문조사 개요

- 목적과 대상 : 부산광역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에 대한 의견(행태)를 분석하여 회계제도 개편에 대한 지지와 개편과정에 잠재돼 있는 갈등요소를 식별
- 기간과 방법 : 2023년 4월24일~5월4일, 부서유형별로 응답자 수를 균일하게 할당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
- 설문내용 :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한 일반적 항목과 성과분석의 주요 영역에 대한 비중 인식에 대한 AHP 설문으로 구성

<표 3-1> 설문응답자의 특성 분포

(단위 : 명, %)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성별	남성	44	38.3	부서별	기획재경	23	20.0
	여성	71	61.7		행정문화	23	20.0
	합계	115	100.0		복지환경	23	20.0
연령별	20대	6	5.2		해양도시안전	23	20.0
	30대	68	59.1		건설교통	23	20.0
	40대	34	29.6		합계	115	100.0
	50대 이상	7	6.1		회계 담당별	기타특별회계	16
	합계	115	100.0	기금		41	35.7
직급별	6급	20	17.7	기타특회, 기금 모두		9	7.8
	7급	82	72.6	모두 일반회계		49	42.6
	8급	11	9.7	합계		115	100.0
	합계	113	100.0				

##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115명은 부서유형별로 23명씩 할당하여 조사했음.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응답자는 66명으로 전체 57.4%를 차지함. 이외 49명의 소속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사업만 운영
- 성별로는 남성 44명 여성 71명으로 여성 응답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됐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비중이 59.1%으로 높고 직급별로는 7급의 비중이 72.6%로 높은 편임.

## 2.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인식일반 종합

### ○ 종합

- 회계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한 쟁점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특별회계 혹은 기금관리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와 일반회계 재정사업만 운영하는 부서 소속 응답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인식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정기적인 회계관리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사업 없이 일반회계 사업만 수행하는 부서의 응답자들은 필요성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AHP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회계 설치와 관련한 ‘합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회계운영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가치 비중 인식은 높지 않았음.
  - 재정사업 운영에서는 회계적 관점에서 예산관리와 업무수행(집행률, 유사중복 등)과 성과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관리(목표달성도 등)가 균등하게 고려되어야 함.
  -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운영에서 ‘합법성’ 기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효율성 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고려하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예산회계 제도 운영 혹은 개편과정에서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설문응답결과에서 쟁점

- 독립세입원 확보와 재원간막이 현상에 대한 우려 일부 인식. 회계관리의 효율성 관련 항목에서는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회계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의 요소에 대해 특별한 쟁점 인식은 없었는데, 주민참여와 관리효율성 등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인식

○ 정책적 시사점

- 제한적 수준에서 일반회계의 예외로서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동시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회계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의 효율성 관련 관리수단의 강화 필요

### 3. 설문항목별 응답결과

○ 특별회계와 기금 회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응답자의 절반인 54명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음.
- 현대 재무행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동일한 해석이며, 예외적인 회계운영의 활성화를 지지한 응답자는 32명으로 전체 29.6%임.

<표 3-2> 특별회계와 기금 회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빈도	비중
① 예산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20.4
② 중앙정부 법령 사항 이외는 특별회계·기금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54	50.0
③ 부산시 자체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32	29.6
합계	108	100.0

○ 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운영의 합리성 정도

- 특별회계와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해당 분야 재정사업 혹은 정책에서 예외적이고 전략적인 특성이 인정돼야 함.
- 회계운영의 합리성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네 가지 항목 모두 5점척도 기준 평균 3.58점에서 3.82점 수준이며 회계정보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3> 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운영의 합리성 정도

	매우 잘못운영	잘못 운영	보통	잘 운영	매우 잘 운영	합계	응답자 수	평균 (5점척도)
2-1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3.5	46.1	39.1	11.3	100.0	115	3.58
2-2 중기재정운영계획		6.1	47.0	37.4	9.6	100.0	115	3.50
2-3 고유목적 사업 중심 회계운영	0.9	4.3	33.0	47.0	14.8	100.0	115	3.70
2-4 재정사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38.6	40.4	21.1	100.0	114	<b>3.82</b>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간 “유사 중복성”

- 일반회계 중심의 예산운영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와 기금의 회계적인 타당성과 관련한 쟁점은 ‘유사 중복성’에 대한 것임.
- 유사중복 쟁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엇갈렸음. 유사중복성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40명으로 34.8%이며 반대로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응답자는 28명으로 전체 24.4%를 차지하였음.

<표 3-4>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간 “유사 중복성”

	빈도	비중
① 전혀없다	7	6.1
② 없는 편이다	33	28.7
③ 보통이다	47	40.9
④ 어느 정도 있다	<b>24</b>	<b>20.9</b>
⑤ 매우 심하다	<b>4</b>	<b>3.5</b>
합 계	115	100.0
평 균 (5점척도)	<b>2.87</b>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운영 효율성

-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운영 효율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 설문하였는데, 항목별로 인식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 사업별 자원배분의 유연성과 재량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아 5점 척도에서 평균 3.64점임. 이와 달리 회계관리 관련 인력 등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3.23점임. 타회계와 연계조정에 대한 응답결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3.34점임.

<표 3-5>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운영 효율성

	매우 비효율	비 효율	보통	효율적	매우 효율적	합계	응답자 수	평균 (5점척도)
4-1 독립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7.0	40.0	44.3	8.7	100.0	115	3.55
4-2 사업별 자원배분의 유연성·재량성		6.1	34.8	47.8	11.3	100.0	115	3.64
4-3 일반회계 등 타 회계와 연계 조정		11.3	51.3	29.6	7.8	100.0	115	<b>3.34</b>
4-4 회계관리 관련 인력 등 관리효율성	0.9	14.8	49.6	29.6	5.2	100.0	115	<b>3.23</b>

○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회계특성

- 특별회계와 기금 회계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장 큰 명분은 특정한 세입과 세출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것임. 부산의 경우는 회계의 독립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음.
- 회계 자체적으로 충분한 세입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3.5%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5점 척도에서 평균 3.11점으로 응답수준은 낮았음.
- 집행률관리의 충분성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 평균점수는 3.4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해석됨.

<표 3-6>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회계특성에 대한 동의 정도

	전혀 동의 않음	동의 않음	보통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합계	응답자 수	평균 (5점척도)
5-1 회계 자체적으로 충분한 세입 확보가능	3.5	20.0	44.3	26.1	6.1	100.0	115	<b>3.11</b>
5-2 회계내 재정사업의 충분한 집행률 관리		9.6	44.3	38.3	7.8	100.0	115	3.44

○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성과관리 적절성

- 회계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요 항목들은 성과지표와 목표설정 그리고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등임. 이와 관련한 설문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성과관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음. 다만, 주민참여에 대한 응답은 5점척도 기준에서 3.1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인식은 전문가관점에서 기대되는 성과관리의 비판적 해석과 적지 않은 인식격차가 있음. 특히 기금회계의 경우 개별 회계 분석보고서에서 성과관리 관련 분석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됐음.

<표 3-7>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성과관리 적절성

항 목	매우 부적절	부 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합계	응답자 수	평균 (5점척도)
6-1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목표치 설정	0.9	3.5	51.8	36.8	7.0	100.0	115	3.46
6-2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1.8	14.9	51.8	26.3	5.3	100.0	115	<b>3.18</b>
6-3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환류		5.3	52.6	36.0	6.1	100.0	115	3.43
6-4 회계 설치의 결과지향적 목적 달성		7.0	43.9	36.0	13.2	100.0	115	3.55

○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운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동의 정도

- 일반회계의 예외영역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 잠재돼 있는 각종 쟁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응답자들은 현재의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에서 병리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표 3-8>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운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동의 정도

	전혀 동의 않음	동의 않음	보통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합계	응답자 수	평균 (5점척도)
7-1 자원배분의 칸막이 현상	6.1	13.9	40.9	33.0	6.1	100.0	115	<b>3.19</b>
7-2 재정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기득권 형성	9.6	19.1	38.3	24.3	8.7	100.0	115	3.03
7-3 방만한 회계운영에 따른 건전성 위험	7.0	23.5	38.3	27.0	4.3	100.0	115	2.98
7-4 소관 부서의 회계 관리 역량 부족	3.5	21.7	43.5	26.1	5.2	100.0	115	3.08
7-5 회계에 대한 감사 및 모니터링 부족	5.2	20.0	47.8	21.7	5.2	100.0	115	3.02

- 다섯 가지 쟁점 가운데 재원배분의 칸막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19점이며 나머지 네 가지 항목들은 3점 정도의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정기적 점검 필요성

-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설치 운영한 이후 정기적으로 각종 회계들을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45.6%는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했음. 5점척도에서 응답결과의 평균은 3.46점임.
- 재원배분의 칸막이와 관리역량부족 등과 같은 병리적인 쟁점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정례 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9>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정기적 점검 필요성

	빈도	비중
① 전혀 동의 않음	-	-
② 동의 않음	11	9.6
③ 보통	51	44.7
④ 동의함	41	<b>36.0</b>
⑤ 매우 동의함	11	9.6
합 계	114	100.0
평 균 (5점척도)	<b>3.46</b>	

#### 4.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항목에 대한 AHP 설문 결과

○ 성과분석 항목에 대한 AHP 설문 개요

-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성과를 분석할 때, 적용하는 각종 분석지표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응답결과는 회계의 설치와 운영에서 실무자들이 고려하는 가치비중을 해석하기 위한 것임.

- AHP 설문결과에서 확인되는 항목별 중요도 결과는 본 연구의 성과분석에 적용하는 지표별 가중치와는 별개의 영역임. 설문결과는 부산시 공무원의 현실 인식에 대한 것임.
- 본 연구의 성과분석때 적용하는 접근방식과 가치비중 설계에서는 예산운영 효율성 영역 중심으로 가중치 구조를 설계하였음.

○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AHP 분석

- 특별회계 운영에서 고려해야할 합목적성, 효율성, 책임성 결과
  - 합목적성(0.440), 효율성(0.322), 책임성(0.237)로 나타나 부산시 공무원은 기타특별회계의 성과평가 항목 중 합목적성을 중요하게 여김

<표 3-10> 부산시 특별회계의 성과평가 항목의 단계별 우선순위

구분	중요도	순위	세부지표	중요도	순위
합목적성	0.440	1	합법성	0.322	1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0.263	2
			타회계재원의존율	0.205	4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0.205	3
효율성	0.322	2	유사중복	0.269	2
			관리효율성	0.328	1
			자체세입증감률	0.205	3
			집행률	0.193	4
책임성	0.238	3	실질수지비율	0.266	1
			미회수채권비율	0.155	5
			지방채의존율	0.166	4
			성과목표의 적절성	0.206	2
			성과목표 달성 정도	0.186	3

- 합목적성, 효율성, 책임성의 세부지표에 대해 중요도 분석을 한 응답결과
  - 합법성 세부지표인 합법성(0.322),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0.263), 타회계재원의존율(0.205), 고유목적사업비율(0.205)로 나타나 합법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김
  - 효율성 세부지표인 관리효율성(0.328), 유사중복(0.269), 자체세입증감률(0.205), 집행률(0.193)로 나타나 관리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김
  - 책임성 세부지표인 실질수지비율(0.266), 성과목표의 적절성(0.206),

성과목표 달성 정도(0.186), 지방채의존율(0.166), 미회수채권비율(0.155)로 나타나 실질수지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 기금에 대한 AHP 분석

- 기금 사업에 대한 합목적성,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AHP분석 결과
  - 합목적성(0.433), 효율성(0.317), 책임성(0.215)로 나타나 부산시 공무원은 기금의 성과평가 항목 중 합목적성을 중요하게 여김
- 합목적성, 효율성, 책임성의 세부지표에 대해 중요도 분석을 한 결과
  - 합법성 세부지표인 합법성(0.329),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0.257), 타회계재원의존율(0.195), 고유목적사업비율(0.185)로 나타나 합법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김
  - 효율성 세부지표인 관리효율성(0.310), 유사중복(0.282), 자체시입증감률(0.194), 집행률(0.179)로 나타나 관리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김
  - 책임성 세부지표인 실질수지비율(0.261), 성과목표의 적절성(0.208), 성과목표 달성 정도(0.174), 지방채의존율(0.166), 미회수채권비율(0.147)로 나타나 실질수지비율이 가장 중요하게 여김

<표 3-11> 부산시 기금의 성과평가항목의 단계별 우선순위

구분	중요도	순위	세부지표	중요도	순위
합목적성	0.433	1	합법성	0.329	1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0.257	2
			타회계재원의존율	0.195	3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0.185	4
효율성	0.317	2	유사중복	0.282	2
			관리효율성	0.310	1
			자체시입증감률	0.194	3
			집행률	0.179	4
책임성	0.215	3	실질수지비율	0.261	1
			미회수채권비율	0.147	5
			지방채의존율	0.166	4
			성과목표의 적절성	0.208	2
			성과목표 달성 정도	0.174	3

## IV.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 1. 성과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 분석지표와 점수부여

#### 1) 분석지표체계

- 회계 설치 및 운영의 성과분석을 위한 핵심 영역(가치)으로 합목적성, 효율성, 책임성의 세 가지를 설정
- 합목적성 영역 :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
  - 법적 근거의 확보 여부와 구체적 강도 등을 고려하는 합법성 지표와 회계의 설치 타당성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적 의미에서) 합목적성 영역으로 세분
  - 세부 영역인 합목적성을 분석하는 평가지표는 회계운영에 적용되는 전략과 계획의 적성을 분석하는 비계량지표와 회계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량지표로서 타회계재원의존율과 고유목적사업비비율을 적용
- 효율성 영역 : 유사중복과 관리효율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
  - 유사중복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정도 혹은 중복 잠재성 정도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
  - 관리효율 : 일반회계에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별도 회계로 운영할 때 관리의 관점에서 효율성 정도를 정성적으로 분석. 계량지표로서 결산기준 집행률 지표를 병행 사용
- 책임성 영역 : 회계책임성(건전성)과 성과책임성(사업성과)로 구성
  - 회계적 책임성은 재정건전성 지표를 적용하여 실질수지비율과 지방재의 준비율 사용
  - 성과책임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성지표로서 성과목표의 특성과 관리체계 등을 분석하고 정량지표로서 목표달성률 사용

#### 2) 분석지표의 점수화 방법

##### ○ 비계량지표 점수화

- 분석가 관점에 따른 정성지표 평가결과의 편차를 관리하기 위해 비계량지표별로 점수 기준사항을 적용했음.

<표 4-1>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분석을 위한 분석지표 체계

(괄호안은 가중치)		평가지표	비계량지표	평가산식	가중치	
합목적성 (30)	합법성	법적 근거의 구체성/법적 의무성	정성평가	10점척도	5	
	합목적성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정성평가	10점척도	5	
		회계적 타당성		정량평가	타회계재원의존율	10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10
효율성 (40)	유사중복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정성평가	10점척도	15	
	관리효율	독립 예산단위 사업으로서 관리효율성	정성평가	10점척도	10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정량평가	자체세입증감률	5
					집행률	10
책임성 (30)	회계책임 (건전성)	회계의 재정건전성	정량평가	실질수지비율	5	
				지방채의존율	5	
	성과책임 (사업성과)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문제해결성	정성평가	10점척도	15	
					성과목표 달성 정도	정량평가
종합점수		100.0점				

- 합법성 정도 : 회계 설치의 근거법규 유무와 구체성 정도, 법률과 조례의 근거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점단위의 10점 척도 적용
-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 회계별로 운영하는 고유사업수의 규모와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정도에 따라 2점 단위의 10점 척도 적용
- 유사중복 :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지출하는 재정사업들과 일반회계의 재정사업들간 연관성 정도와 잠재적 유사성 정도에 따라 2점 단위의 10점 척도 적용
- 독립예산단위사업으로서 관리효율성 : 장기계획 수립여부와 사업별로 예산재원 배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2점 단위의 10점 척도 적용
- 성과목표 적절성과 문제해결성 : 회계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도를 고려하여 2점 단위의 10점 척도 적용

- 계량지표 점수화 : 각연도별 지표값에 대한 최근 3년평균값 적용
  - 타회계의존율 : 지표산식에서 계산된 지표값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 지표산식에서 계산된 지표값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 자체세입증감률 : 전년대비 증감률 지표값에 따라 최소 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3단계 구분하여 점수 부여. 전년대비 마이너스인 경우 5점, 10% 미만 7점, 10% 초과 10점.
  - 집행률 : 지표산식에서 계산된 지표값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 실질수지비율 : 지표값이 양의 값을 가진 경우 10점, 음의 경우는 5점. 회계의 재정건전성은 독립적인 채무와 부채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대비 연말 집행을 비교하여, 연말집행행이 계획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
  - 지방채의존율 : 지표산식에서 계산된 지표값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 목표달성 : 지표산식에서 계산된 지표값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회계별로 설정한 성과목표가 다수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순 합계하여 평균점수로 환산.

○ 종합점수 환산을 위한 분석지표별 가중치 설정

- 성과분석 지표별로 점수화하여 1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한 이후,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 세 가지 분석 부문 가운데 효율성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40%로 설정하고 책임성(30%), 합목적성(30%)의 비중을 배분함. 예산부서의 관점에서는 예산재원 운영의 효율성 가치를 높게 부여함. 특별회계와 기금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합법적 혹은 합목적성 가치들은 사전에 반영된 것으로 전제하여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배분
- 지표별로, 예산운영의 관점에서 회계체도를 개편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일반회계사업과 '유사중복성',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두 가지임. 이들 세 가지 지표에 대해 각각 15%, 15%의 가중치를 부여. 나머지 성과분석지표의 가중치는 5점과 10점으로 구분하여 배분함.

<표 4-2> 성과분석에 적용하는 비계량지표 점수 기준

		평가지표	기준 점수	기준
합 목 적 성	합법성	법적 근거의 구체성/법적 의무성	10	법적 강행규정(해야 한다) 존재
			8	법적 가능 규정(할 수 있다) 존재 + 조례 강행 규정 존재
			6	법적 가능 규정 존재 + 조례 가능 규정 존재
			4	법적 근거 미약(지방자치법 등 일반법 근거) + 조례 근거
			2	법적 근거 없음
	합목적성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8~10	'21 혹은 '22 기금 설치 운용기한 연장기금 평가 우수)
			6	장기계획 존재 + 고유 사업 다수(5개 이상) 운영
			4	장기계획 존재 + 고유 사업 소수 운영
			2	장기계획 없음
	효 율 성	유사중복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10
8				일반회계 유사 사업 없음
6				특별회계 유사 사업 존재
4				일반회계 유사 사업 가능
2				일반회계 유사 사업 존재
관리효율		독립 예산단위 사업으로서 관리효율성	10	장기계획 존재 + 사업 예산 반영 적절
			8	장기계획 존재 + 사업 예산 단순 반영(동일 사업 반복 예산)
			6	장기계획 없음 + 사업 예산 반영 과다(기본 경비 및 일 반운영비 과다)
			4	장기계획 없음 + 사업 없음
			2	장기계획 없음 + 사업 없음
책 임 성	성과책임 (사업성과)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문제해결성	10	성과목표 적절(주관적)+ 법적 근거에 따른 기금 목표 반 영 우수
			8	성과목표 적절(주관적)+ 법적 근거에 따른 기금 목표 반 영 보통
			6	성과목표 보통(주관적)+ 법적 근거에 따른 기금 목표 반 영 우수
			4	성과목표 보통(주관적)+ 법적 근거에 따른 기금 목표 반 영 보통
			2	성과목표 없음

※ 기준점수에서 ± 1 점을 가감하여 점수부여

<표 4-3> 성과분석에 적용하는 계량지표 점수기준

계량지표	점수 기준	지표산식	비고
타회계 재원의존률	지표값 (10점 만점, 소수점 1자리)	$\frac{\text{일반} + \text{특별회계 전입금}}{\text{기금수입결산총액}} \times 100$	예치금과 예탁금 제외 지표값 산정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지표값 (10점 만점, 소수점 1자리)	$\frac{\text{고유목적사업비}}{\text{기금지출총액}} \times 100$	
자체세입 증감률	10점 [지표값 10% 이상] 7점 [지표값 0% 이상] 5점 [지표값 0% 미만]	고유자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한 자체재원의 전년대비 증감률	예치금과 예탁금 제외 지표값 산정
집행률	지표값 (10점 만점, 소수점 1자리)	$\frac{\text{집행액}}{\text{총지출계획}} \times 100$	예치금과 예탁금 제외 지표값 산정
실질수지 비율	10점 [지표값 + 비율] 5점 [지표값 - 비율]	$\frac{\text{실질수지액}}{\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지방채 의존율	지표값 (10점 만점, 소수점 1자리)	$\frac{\text{지방채발행액}}{\text{총세입액}} \times 100$	
목표 달성도	지표값 (10점 만점, 소수점 1자리)	$\frac{\text{실적(성과)}}{\text{성과목표치}} \times 100$	개별 성과지표 단순 평균

주 : ‘고유자원’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계의 세입으로 지정된 재원을 모두 포괄. 중앙정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해당 회계에 지정된 경우에도 고유재원으로 산정 (단, 기타회계전입금의 경우 법령에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이면서 기금의 재원에 기타회계전입금이 규정된 경우만 인정)

○ 종합점수 기준, 분석결과에 따른 회계제도 개선권고(안)

－ 현행유지

- 종합점수 90점이상
-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제도를 운영

－ 사업방식개선 :

- 종합점수 70점이상 90점 미만
- 회계제도는 계속 운영하지만, 예산 혹은 재정사업관리에서 집행률제고와 성과관리 강화 등의 주요 영역에서 적극적인 사업운영 노력 요망

－ 통합

- 종합점수 수준과 관계없이 회계관리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유사 성격의 특별회계 혹은 기금으로 통합하고 관리효율성 제고

－ 일반회계 전환

- 종합점수 70점 미만
- 특별회계 혹은 기금회계를 폐지하고 소관 재정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

○ 예외사항

- 일반회계전환(단계적 전환) 세입재원에서 특정 기부금재원이 있어 일반회계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 기부금 재원 수입의 추세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

※ 예,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 종합점수 기준으로는 일반회계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방식개선’ 적용

※ 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2. 성과영역별 종합분석

### 1) 기타특별회계 성과분석 종합

○ 회계제도 개편 권고(안)

-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16개 기타특별회계의 종합점수는 최저 62.7점에서 최고 93.8점까지 다양하게 분포됐음.
- 현행유지(4개) : 의료급여기금, 교통사업, 유료도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 사업방식개선(8개) : 광역교통시설, 도시철도사업,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재정비축진, 기반시설부담구역, 화력발전지역개발, 소방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통합(2개)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경륜사업 특별회계
- 일반회계전환(2개) : 공영차고지조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 특별회계

○ 통합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세입재원을 동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재정사업을 수행함. 이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고 재원운영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서 소관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경률평사업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운영에서 특별한 쟁점은 없음. 다만, 경률평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두 가지 계정이 별도로 운영되어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편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여 (가칭)경률평사업기금을 신설

<표 4-4> 기타특별회계 성과분석 종합

사업명	분석결과	2023년예산 (억원)	종합점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통합	282	82.3
경률평사업	통합	322	88.9
의료급여기금	현행유지	12,214	91.4
교통사업	현행유지	761	91.3
광역교통시설	사업방식개선	119	82.9
공영차고지조성	일반회계 전환	21	62.7
도시철도사업	사업방식개선	4,594	72.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반회계 전환	1,015	64.2
유료도로	현행유지	365	91.7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사업방식개선	367	86.3
재정비축진	사업방식개선	76	71.5
기반시설부담구역	사업방식개선	34	79.8
화력발전지역개발	사업방식개선	20	83.3
소방특별회계	사업방식개선	4,309	83.9
학교용지부담금	사업방식개선	448	65.0
국민주택사업	현행유지	541	93.8

○ 일반회계 전환 회계

- 공영차고지조성특별회계 : 집행률 지표값이 41.1%로서 낮고 실질수지비율이 -39.9%로서 사업관리의 재원안정성이 취약함. 세입재원을 관례적으로 이월하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 세입재원 구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 이내의 재원을 전입하는 규정이 있음. 이에 따라 세입재원의 타회계의존율은 낮지만 자체 고유재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음. 지방채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집행률 수준도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회계 전환으로 권고

○ 적용기준 예외사항 :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

- 종합점수는 65.0점으로 일반회계 전환 기준이 적용됨.
- 다만, 중앙정부의 규정한 상위법률에서 지자체 의무설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제도 개편 재량은 없음.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환 대신 사업방식개선을 권고함.

2) 기금회계 성과분석 종합

○ 회계제도 개편 권고(안)

-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18개(26 계정) 기금 종합점수는 최저 30.0점에서 최고 96.6점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됐음.
- 현행유지(3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재해구호기금
- 사업방식개선(11개) :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투자계정), 투자진흥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문화진흥기금(영화영상진흥계정), 지역개발기금
- 통합(3개) :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체육진흥기금(사업준비금계정), 체육진흥기금(손실보전계정)
- 일반회계전환(9개) :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3개 계정),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관광마이스육성기금

○ 통합 : ※ 기타특별회계 권고안 참조

○ 일반회계 전환 : 전반적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의 비중이 높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3년도 사업예산은 1억원이며 기금 예산의 대부분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운영함. 현재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출수요 발생시 일반회계에서 자원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한 기부금을 운영하는 계정임. 기부금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의 세입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의 문화프로그램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배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 2022년도에 임팩트투자펀드조합조성출자금 10억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2023년도에는 추가 사업이 없음. 소규모 영세 계정으로 분산운영하기 보다는 펀드투자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투자계정)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환경보전기금 : 매년 관례적으로 운영하는 소액의 재정사업들이 다수 있어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개별 사업들을 통합하여 전략적인 성과관리지표와 목표치 설정이 쉽지 않을 정도로 사업유형과 내용이 분절적임. 세입재원의 상당액을 예탁금과 예치금으로 운영하여 환경재원이 사장되는 비효율성의 쟁점이 잠재돼 있음.
-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 2022년도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지출 이외 고유사업이 없음.
-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3개 계정) : 기금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에서 종합적으로 예산 재원을 배분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세부 내역사업들이 계정목적과 관련성에서 제한적이고 예치금과 예탁금의 비율이 높아 예산재원의 사장에 따른 비효율성 쟁점이 있음.
-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 체육시설개보수와 관련된 예산재원은 지출수요가 시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재원을 사장하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수요 기준으로 적정 예산재원 배분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신설

- 경륜사업기금 : 경륜사업특별회계와 체육진흥기금(사업준비금계정, 손실보전금계정)을 통합하여 (가칭)경륜사업기금을 신설

○ 적용기준 예외사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계정으로 일반적인 사업성기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동 기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기금 운영을 평가할 때 주요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정성지표에서 쟁점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점수가 90점 미만이지만 [현행유지] 대상으로 분류함.

<표 4-5> 기금회계 성과분석 종합

사업명		분석결과	2023년 예산(억원)	종합점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현행유지	646	8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현행유지	5,879	96.6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사업방식개선	29	72.0
집단에너지시설기금		통합	124	50.9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계정	사업방식개선	899	71.5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일반회계 전환	-	30.0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투자계정	현행유지	123	75.9
투자진흥기금		사업방식개선	675	73.4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환	38	43.5
자활기금		사업방식개선	45	83.8
재해구호기금		현행유지	457	91.5
식품진흥기금		사업방식개선	76	74.4
환경보전기금		일반회계 전환	88	62.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사업방식개선	44	86.8
재난관리기금		사업방식개선	603	8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사업방식개선	825	75.4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 육성기금	양성평등계정	일반회계 전환	55	63.2
	출산지원계정	일반회계 전환	260	64.6
	청소년육성계정	일반회계 전환	19	64.2
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	일반회계 전환	680	56.0
	영화영상진흥계정	사업방식개선	91	73.3
체육진흥기금	사업준비금계정	통합	44	59.7
	손실보전금계정	통합	12	54.3
	체육진흥계정	일반회계 전환	388	61.0
지역개발기금		사업방식개선	1,489	76.8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일반회계 전환	40	59.1

<표 4-6> 성과분석 결과에 기초한 회계제도 개편안 종합

(단위 : 억원)

분석결과	특별회계		기금	
	회계명	지출액	회계명	지출액
현행유지	의료급여기금	12,2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646
	교통사업	7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79
	유료도로	365	재해구호기금	457
	국민주택사업	541		
사업방식 개선	광역교통시설	119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29
	도시철도사업	4,594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계정)	899
	원자력발전지역개발	367	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투자계정)	123
	재정비축진	76	투자진흥기금	675
	기반시설부담구역	34	자활기금	45
	화력발전지역개발	20	식품진흥기금	76
	소방특별회계	4,30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4
	학교용지부담금	448	재난관리기금	6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825
			문화진흥기금(영화영상진흥계정)	91
		지역개발기금	1,489	
통합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8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24
	경륜사업특별회계	322	체육진흥기금(사업준비금계정)	44
			체육진흥기금(손실보전금계정)	12
일반회계 전환 (단계적전환)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680
일반회계 전환	공영차고지조성	21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등보상	1,015	남북교류협력기금	38
			환경보전기금	88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양성평등계정)	55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출산지원계정)	260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육성계정)	19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388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40	

<표 4-7> 일반회계 전환 대상 특별회계와 기금의 지표별 성과분포

사업명	분석결과	2023 예산 (억원)	점수	합목적성 (30점)				효율성 (40점)				책임성 (30점)				
				합법성	합목적성			유사 중복	관리효율			회계책임		성과책임		
					전략 계획 적정성	회계적 자원 의존율	타당성 (예치예탁금제외) 고유 목적 사업 비율		독립 예산 관리 효율	집행관리 효율성과유연성 (예치예탁금제외) 자체 세입 증감률	집행률	실질 수지 비율	지방채 의존율	성과 목표 적절성	성과 목표 달성도	
특회	공영차고지조성	일반 회계 전환	21	62.7	4	6	18.6%	69.0%	4	6	64.1%	41.1%	-36.9%	0.0%	6	10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	일반 회계 전환	1,015	64.2	4	4	0.0%	93.9%	4	4	4.8%	75.1%	1.4%	24.8%	2	100.0%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일반 회계 전환	-	30.0	2	2	100.0%	0.0%	4	4	-	0.0%	100.0%	0.0%	2	0.0%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 회계 전환	38	43.5	2	2	30.1%	0.0%	4	4	34.6%	0.0%	99.6%	0.0%	6	9.7%
	환경보전기금	일반 회계 전환	88	62.5	4	4	0.0%	35.7%	4	8	9.7%	96.5%	29.2%	0.0%	2	95.7%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계정)	일반 회계 전환	55	63.2	6	6	0.0%	10.9%	2	10	15.7%	97.7%	-149.7%	0.0%	4	97.7%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출산지원계정)	일반 회계 전환	260	64.6	6	6	0.0%	36.8%	4	10	-12.0%	86.3%	-313.5%	0.0%	4	84.8%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계정)	일반 회계 전환	19	64.2	6	6	23.5%	2.3%	4	10	30.3%	88.9%	67.5%	0.0%	4	88.9%
	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	일반 회계 전환 (단계적 전환)	680	56.0	2	8	83.9%	47.0%	4	8	-9.2%	81.1%	-306.4%	0.0%	6	70.6%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계정)	일반 회계 전환	388	61.0	2	8	29.9%	6.5%	4	8	50.3%	66.7%	0.7%	0.0%	6	33.3%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일반 회계 전환	40	59.1	4	4	99.1%	27.0%	4	8	150.0%	41.6%	73.0%	0.0%	10	83.1%	

<표 4-9> 일반회계 전환 유형 기금의 지출 내역사업(2023)

(단위 : 백만원, %)

기금	내역사업	2022	2023	비중	
환경보전기금	쓰레기감량우수구군지원	80	130	1.5	
	찾아가는자원순환정책설명회	5	5	0.1	
	재해쓰레기등특별청소대책비	140	140	1.6	
	폐기물감량및도시청결사업	553	895	10.1	
	자원순환분야시책사업	15	15	0.2	
	공공기반시설확충	570	581	6.6	
	일반운영비	46	46	0.5	
	재활용품수집장려지원금	20	50	0.6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컨설팅운영	20	20	0.2	
	자원재활용우수사례공모전	25	25	0.3	
	시민참여나눔장터행사운영	25	30	0.3	
	구군나눔장터확대운영		20	0.2	
	RFID기반공동주택생물학적재활용시설보급	257	538	6.1	
	재활용정거장운영지원사업	55	65	0.7	
	소규모공동주택분리수거함사업추진	18	18	0.2	
	IoT분리배출함설치지원사업		20	0.2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입		450	5.1	
	환경협력및국제교류강화	500	480	5.4	
	<b>예탁금</b>		<b>4,000</b>	<b>3,500</b>	<b>39.6</b>
	<b>예치금</b>		<b>1,997</b>	<b>1,802</b>	<b>20.4</b>
합계		8,326	8,830	100.0	
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계정	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	300	280	5.1
		위풍당당링크사업	30	30	0.5
		양성평등포럼운영사업	15	30	0.5
		저소득한부모가족입학생준비금지원	72	70	1.3
		저소득한부모가족질병치료비등지원	20	20	0.4
		한부모가족복지시시설자립프로그램운영	18	18	0.3
		<b>예탁금</b>	<b>2,500</b>	<b>3,000</b>	<b>54.7</b>
		<b>예치금</b>	<b>1,750</b>	<b>2,040</b>	<b>37.2</b>
		합계	4,705	5,488	100.0

기금		내역사업	2022	2023	비중
출산지원 계정	출산지원 계정	핑크라이트운영(사무관리비)	85	349	1.3
		구군육아친화마을워크샵및컨설팅		4	0.0
		핑크라이트운영앱개발		275	1.1
		신혼부부주택응자및대출지원	7,295	10,044	38.7
		둘째아이후출산지원금지원등	7,376	6,100	23.5
		구군육아친화마을운영지원		90	0.3
		<b>예탁금</b>	<b>10,000</b>	<b>4,500</b>	<b>17.3</b>
		<b>예치금</b>	<b>4,882</b>	<b>4,588</b>	<b>17.7</b>
		합계	29,638	25,950	100.0
	청소년육성 계정	청소년건전육성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30	30	1.6
		청소년수련시설스탬프투어		12	0.6
		재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지원		80	4.2
		<b>예탁금</b>	<b>1,500</b>	<b>1,400</b>	<b>73.1</b>
		<b>예치금</b>	<b>263</b>	<b>394</b>	<b>20.6</b>
합계	1,793	1,916	100.0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계정)	제106회전국체육대회시설개보수		10,000	25.8	
	기금운용위원회참석수당	2	2	0.0	
	<b>예치금</b>	<b>2,096</b>	<b>3,790</b>	<b>9.8</b>	
	<b>예탁금</b>	<b>28,000</b>	<b>25,000</b>	<b>64.4</b>	
	합계	30,098	38,792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민간경상보조)	100	700	16.3	
	<b>예탁금</b>	<b>2,700</b>	<b>2,000</b>	<b>46.5</b>	
	<b>예치금</b>	<b>1,020</b>	<b>1,604</b>	<b>37.3</b>	
	합계	3,820	4,304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임팩트투자펀드조합조성출자금	1,000	-	-	
관광마이스육성 진흥기금	관광마이스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	4	4	0.1	
	<b>예치금</b>	<b>1,706</b>	<b>2,034</b>	<b>50.4</b>	
	<b>예탁금</b>		<b>2,000</b>	<b>49.5</b>	
	합계	1,710	4,038	100.0	
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	문화시설확충(오페라하우스)	5,037	64,100	94.2	
	문화복지지원	300	100	0.1	
	<b>예치금</b>	<b>34,767</b>	<b>3,822</b>	<b>5.6</b>	
	합계	40,104	68,022	100.0	

### 3) 회계제도 개편시 재정영향

- 회계제도 개편이 해당 사업별 자원배분의 증감을 의미하지 않음. 재정사업의 관리 회계단위가 개편되는 것으로, 예산자원 배분과 재정사업운영의 유연성과 경직성 그리고 회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의 관리적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 2023년 당초예산기준으로 분석대상 기금의 총 지출액은 3조9,117억원임. 현행유지와 사업방식개선 유형에 속하는 지출액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음. 각각 2조 863억원과 1조 4,866억원
-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부산시 전체 지방재정 운영체계에서 종합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2,604억원임. 특별회계 2개와 기금(계정) 9개가 해당됨. 해당 회계의 예산 혹은 기금재원كم 부산시에서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다만, 일반회계 전환 대상 회계에서 운영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 회계제도 개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회계별 예치금과 예탁금에 대한 것임. 2022년 결산 기준으로 11개 회계(기타특회 2개, 기금 9개)의 예치금과 예탁금은 모두 2,321.7억원 수준임.

<표 4-9> 회계제도 개편시 예상되는 재정영향(2023)

(단위 : 억원)

분석결과	특별회계	기금	합계
현행유지	13,881	6,982	20,863
사업방식개선	9,967	4,899	14,866
통합	604	180	784
일반회계전환 (단계적전환)	-	680	<b>680</b>
일반회계전환	1,036	888	<b>1,924</b>
합계	25,488	13,629	39,117

<표 4-10> 일반회계 전환 회계의 예치금과 예탁금 현황(2022)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결산 세계잉여금 (예치금)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예탁금	합계
계	68,062	164,104	232,166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6	2,292	2,45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등보상특별회계	1,935	550	2,485
남북교류협력기금	2,333	7,283	9,616
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	40,195	16,474	56,669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계정)	2,372	62,060	64,432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1,938	-	1,938
환경보전기금	4,743	12,836	17,579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계정)	1,873	10,573	12,446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출산지원계정)	11,217	47,004	58,221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계정)	290	5,032	5,322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1,000	-	1,000

<4-11> 회계별·분석지표별 지표값 분포

연번	회계구분	사업명	(민정결과)	합목적성 (30점)			효율성 (40점)			책임성 (30점)			성과지표											
				합목적성	경제적 타당성 (예산내부금제외)	합목적성	관리효율성	합목적성	관리효율성	합목적성	관리효율성	합목적성		관리효율성										
															점수	지표값	점수	지표값	점수	지표값	점수	지표값		
1	특별회계	진단예산지급사업	총합 (진단예산지급사업으로 총합)	82.3	10	10	0.0%	10.0	94.9%	9.5	6	8	-0.3%	5	93.1%	9.3	7.4%	10	0.0%	10.0	6	100.0%	10.0	
2	특별회계	경로사업특별회계	총합 (경로사업지급사업)	88.9	6	10	36.1%	6.4	97.8%	9.8	10	8	26.9%	10	96.9%	9.7	10.0	2.6%	10	0.0%	10.0	8	104.0%	10.0
3	특별회계	연료급여기금	연료급여기금	91.4	10	10	13.6%	8.0	100.0%	10.0	10	8	6.3%	7	96.7%	10.0	0.3%	10	0.0%	10.0	8	97.8%	9.8	
4	특별회계	교통사업	연료급여기금	91.3	10	10	4.8%	9.5	96.2%	9.6	10	8	6.0%	7	96.5%	8.7	4.4%	10	0.0%	10.0	8	122.4%	10.0	
5	특별회계	광역교통사업	광역교통사업	82.9	10	10	0.0%	10.0	91.0%	9.1	10	8	-10.3%	5	43.4%	4.3	2.7%	10	0.0%	10.0	6	100.0%	10.0	
6	특별회계	광역교통사업	광역교통사업	62.7	4	6	15.6%	8.1	69.0%	6.9	4	6	64.1%	10	41.1%	4.1	-36.9%	5	0.0%	10.0	6	103.3%	10.0	
7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72.2	4	8	49.4%	5.1	72.5%	7.3	8	6	4.1%	7	98.6%	9.9	0.1%	10	30.3%	7.0	6	126.0%	10.0	
8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4.2	4	4	0.0%	10.0	93.9%	9.4	4	4	4.8%	7	75.1%	7.5	1.4%	10	24.8%	7.5	4	100.0%	10.0	
9	특별회계	유료도로	유료도로	91.7	10	10	0.0%	10.0	79.7%	8.0	10	10	-6.1%	5	97.4%	9.8	6.3%	10	0.0%	10.0	8	89.0%	8.9	
10	특별회계	왕자개발단지개발	왕자개발단지개발	86.3	6	6	0.0%	10.0	96.2%	9.6	10	6	7.3%	7	91.4%	9.1	7.1%	10	0.0%	10.0	8	100.0%	10.0	
11	특별회계	재정비축전	재정비축전	71.5	6	6	0.0%	10.0	10.4%	1.0	10	5	29.2%	10	70.0%	7.0	33.3%	10	0.0%	10.0	5	100.0%	10.0	
12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79.8	10	10	0.0%	10.0	73.7%	7.4	10	5	-5.5%	5	59.6%	6.0	56.9%	10	0.0%	10.0	6	100.0%	10.0	
13	특별회계	회계발전지역개발	회계발전지역개발	83.3	6	10	0.0%	10.0	100.0%	10.0	10	5	-13.1%	5	88.4%	8.8	12.6%	10	0.0%	10.0	6	100.0%	10.0	
14	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83.9	10	6	0.0%	10.0	23.1%	2.3	8	10	10.5%	10	95.9%	9.6	1.4%	10	0.0%	10.0	8	108.4%	10.0	
15	특별회계	학교유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유지부담금특별회계	65.0	10	8	0.0%	10.0	18.2%	1.8	10	10	1.7%	7	56.3%	5.6	42.5%	10	0.0%	10.0	0	0.0%	0.0	
16	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	국민주택사업	93.8	10	10	5.2%	9.5	100.0%	10.0	10	8	84.7%	10	98.0%	9.9	1.1%	10	0.0%	10.0	8	87.5%	8.8	
17	기금	총합재정안정화기금(총합재정)	총합재정안정화기금	85.3	6	8	0.0%	10.0	0.0%	0.0	10	10	2.1%	7	98.5%	9.9	10.3%	10	0.0%	10.0	10	99.3%	9.9	
18	기금	총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총합재정안정화기금	96.6	6	8	0.0%	10.0	96.2%	9.6	10	10	45.1%	10	100.0%	10.0	0.6%	10	0.0%	10.0	10	99.5%	10.0	
19	기금	대학혁신지원사업특별회계	대학혁신지원사업특별회계	72.0	4	8	81.0%	1.9	65.2%	6.5	6	10	96.1%	10	92.5%	9.3	-10.2%	5	0.0%	10.0	8	96.5%	9.7	
20	기금	진단예산지급사업	진단예산지급사업	50.9	4	4	70.7%	2.9	0.0%	0.0	6	4	30.0%	10	75.0%	7.5	-34.6%	5	0.0%	10.0	4	99.7%	10.0	
21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육육상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육육상계정)	71.5	8	8	65.2%	3.5	33.2%	3.3	8	10	-27.9%	5	85.9%	8.6	-13.7%	5	0.0%	10.0	8	81.5%	8.2	
22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30.0	2	2	100.0%	0.0	0.0%	0.0	4	4	-	10	0.0%	0.0	100.0%	10	0.0%	10.0	2	0.0%	0.0	
23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민트무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민트무계정)	75.9	4	4	46.7%	5.3	57.4%	5.7	8	8	31.2%	10	96.5%	9.7	5.5%	10	0.0%	10.0	8	83.0%	8.3	
24	기금	투자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73.4	6	6	0.0%	10.0	24.4%	2.4	8	8	72.5%	10	65.9%	6.6	-111.4%	5	0.0%	10.0	8	77.9%	7.8	
25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43.5	2	2	30.1%	7.0	0.0%	0.0	4	4	35.2%	10	0.0%	0.0	99.6%	10	0.0%	10.0	6	9.7%	1.0	
26	기금	자립기금	자립기금	83.8	10	10	0.0%	10.0	8.4%	0.8	8	10	67.6%	10	100.9%	10.0	-16.2%	5	0.0%	10.0	10	69.6%	7.0	
27	기금	재향군인기금	재향군인기금	91.5	10	8	0.0%	10.0	85.3%	8.5	10	8	72.5%	10	97.9%	9.8	-45.4%	10	15.5%	8.5	8	2917.7%	10.0	
28	기금	시흥진흥기금	시흥진흥기금	74.4	10	8	0.0%	10.0	23.4%	2.3	10	8	-6.3%	5	53.0%	5.3	18.3%	10	0.0%	10.0	6	65.1%	6.5	
29	기금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기금	62.5	4	4	0.0%	10.0	35.7%	3.6	4	8	9.7%	7	96.5%	9.7	29.2%	10	0.0%	10.0	2	95.7%	9.6	
30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추진기금(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추진기금(주민지원기금)	86.8	10	8	0.0%	10.0	78.1%	7.8	10	8	8.0%	7	96.6%	9.7	4.2%	10	0.0%	10.0	6	96.7%	9.7	
31	기금	재산관리기금	재산관리기금	82.3	10	8	0.0%	10.0	62.1%	6.2	10	8	32.8%	10	83.9%	8.4	-73.5%	5	16.9%	8.3	6	164.0%	10.0	
32	기금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82.3	10	8	0.0%	10.0	11.7%	1.2	10	8	-14.6%	5	92.5%	9.3	36.9%	10	0.0%	10.0	4	89.3%	8.9	
33	기금	영양물·중금속 및 염소산·중금속(영양물·중금속계정)	영양물·중금속 및 염소산·중금속(영양물·중금속계정)	63.2	6	6	0.0%	10.0	10.9%	1.1	2	10	15.7%	10	97.7%	9.8	-149.7%	5	0.0%	10.0	4	97.7%	9.8	
34	기금	영양물·중금속 및 염소산·중금속(중금속계정)	영양물·중금속 및 염소산·중금속(중금속계정)	64.6	6	6	0.0%	10.0	36.8%	3.7	4	10	-12.0%	5	86.3%	8.6	-313.5%	5	0.0%	10.0	4	84.8%	8.5	
35	기금	영양물·중금속 및 염소산·중금속(영양물·중금속계정)	영양물·중금속 및 염소산·중금속(영양물·중금속계정)	64.6	6	6	23.5%	7.7	2.3%	0.2	4	10	30.3%	10	88.9%	8.9	67.5%	10	0.0%	10.0	4	88.9%	8.9	
36	기금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66.2	2	8	83.9%	1.6	47.0%	4.7	4	8	-9.2%	5	81.1%	8.1	-306.4%	5	0.0%	10.0	6	70.6%	7.1	
37	기금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문화진흥기금(문화진흥계정)	56.0	2	8	0.0%	10.0	7.6%	0.8	8	8	2503.3%	10	100.0%	10.0	-43.7%	5	0.0%	10.0	6	100.0%	10.0	
38	기금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73.3	4	4	70.5%	3.0	0.0%	0.0	4	10	-18.9%	5	100.0%	10.0	-8.5%	5	0.0%	10.0	6	94.2%	9.4	
39	기금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59.7	10	4	74.0%	2.6	0.0%	0.0	4	8	-70.3%	5	66.7%	6.7	-1882.2%	5	0.0%	10.0	6	100.0%	10.0	
40	기금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계정)	54.3	10	4	29.9%	7.0	6.5%	0.7	4	10	50.3%	10	66.7%	6.7	0.7%	10	0.0%	10.0	6	33.3%	3.3	
41	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61.0	2	8	0.0%	10.0	0.0%	0.0	8	8	18.5%	10	98.0%	9.8	7.0%	10	100.0%	10.0	0.0	10	105.0%	10.0
42	기금	관광미스육성진흥기금	관광미스육성진흥기금	76.8	6	8	0.0%	10.0	0.0%	0.0	8	8	150.0%	10	41.6%	4.2	73.0%	10	0.0%	10.0	10	83.1%	8.3	

### 3. 분석영역별 특성 종합

#### 1) 합목적성

- 특별회계와 기금 법적 근거는 전체적으로 양호
  - 법적 근거의 특성과 강제력 정도는 다양하게 분포
  - 중장기 전략계획이 취약하고 타회계재원의존율 높음
  -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 낮아 회계적 타당성이 취약한 회계 다수
- 회계별로 고유목적사업비율(2022년결산기준) 편차 상당함.
  - 기타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은 최저 10.4%(재정비축진특회)에서 100.0%(의료급여기금)에 이르기까지 지표값의 편차가 상당함.
  - 기금회계는 전체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지표값 편차가 상당함. 재해구호기금(85.3%),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78.1%), 재난관리기금(62.1%)을 제외한 다른 기금들은 모두 지표값이 60% 미만 수준임.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같이 고유목적사업비율이 0%대인 기금이 다섯 가지가 있음.
- 최근 3년간 회계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사항
  -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3년동안 특별회계와 기금 사업을 적극 운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음

#### 2) 효율성

- 회계사업별 유사중복성 쟁점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음.
  - 다만,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지원육성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의 사례와 같이, 매년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재정사업 중심으로 구성된 회계사업들은 일반회계의 재정사업과 유사중복성 쟁점이 상당함.
  - 집단에너지사업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간 자원 이동이 발생하면서 유사중복성 문제가 제기
  -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지원육성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등과 같이 단일한 기금회계에 속해 있지만 계정으로 구분되고, 계정별로 소관부서

와 재원 및 사업목적이 다른 경우는 기금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힘든 사례가 있음. 사회복지 분야 관련 기금에서 이러한 쟁점이 제기

○ 세입재원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취약

- 회계별로 자체세입 비중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지표값의 편차가 상당하며 연도별 증감률에서도 편차가 상당하여 세입 재원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재정사업의 집행률에서도 지표값 편차가 상당한데, 기금회계에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예치금과 예탁금의 비율이 높아, 희소한 재정자원이 사장되는 쟁점

- 특히 기금회계에서, 회계별로 고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회계를 운영한 특성이 있음.

3) 책임성

○ 회계적 책임성

- 세입재원으로 지방채에 대한 의존비율은 일부 회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절대적 수준에서 낮아 회계의 재정건전성 쟁점은 크지 않음.

- 다만, 기금회계에서 실질수지비율이 안정적이지 않아 재정사업 관리의 안정성과 책임성이 취약한 상태임. 연초에 계획한 예산 보다 추가로 기금재원을 지출(집행)하면서 실질수지비율이 연도별로 불규칙적인 등 취약한 상황이 빈번 발생

○ 기금회계는 전반적으로 성과관리체계 취약 : 성과책임 취약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등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업무활동에 대한 것. 해결해야할 문제 중심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재원 중심의 일반업무 특성

- 소규모 영세 회계는 회계명칭에서 상징성은 있어도 목적지향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에 애로 가능. 이러한 경우 재정상징주의 혹은 재정천정현상의 쟁점이 잠재돼 있음

- 성과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지향성 혹은 결과지향적 특성을 가지지 못함. 이에 따라 기금회계가 설치된 고유목적(성과)를 달성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음

## V.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제도 개선과제

### 1.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관리의 고도화 과제

#### ○ 재정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례적인 회계관리체계 정립

-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 진입, 향후 세입여건 악화 등에 따라 부산시의 재정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희소한 공공재원의 최적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략적인 회계관리체계 정립이 요망됨.
  -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혁신접근은 사업의 타당성 측면이 아닌 ‘회계적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인정되면 법률과 조례를 통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 하지만, 이는 관련 사업 자원보장에 대한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은 아님.
  - 사업의 타당성 뿐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자원동원과 재정관리의 효율성 조건도 동등한 수준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부산시 재정 압박이 심화 혹은 현실화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회계관리 노력이 요망됨.
- 중앙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회계에서도 사업운영이 부실하거나 부산시 재정실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소관부처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지방기금법 개정 건의(존속기한 연장 횡수 제한) 등 일몰제 실효성 확보방안 제안
  -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특별회계를 개별 사안별로 별도 설치 보다는, 통합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로 규모있게 운영하는 방안 제안

#### ○ [일반회계 전환 회계]에 대한 재정체계 정립

- 회계 개편과 사업별 예산재원 변화는 별개의 사안임. 회계제도 개편시 관련 공공서비스의 안정성 유지가 필요할 수 있음.
- 회계 개편대상인 회계의 내역사업에 대해 자원중립 원칙을 적용하면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존 사업에 대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음.
- 소관 부서에서, 해당 사업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략적인 성과계획서, 그리고 법정 혹은 비법정 종합정책계획 등과 같은 재

정수단들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체도를 보완  
혹은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기타특별회계(기금) 신설 및 제도개편 고려사항

- 일반회계 중심 예산회계운영의 재정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법정 회계(기금) 이외 예외적인 회계는 인정하지 않거나 한시적인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함.
  - 이와 관련한 예산규범을 정립하고 예산연찬회 등을 통해 사업부서와 지방의회 등과 관련 원칙 혹은 규범에 대한 인식 공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을 신설할 경우, 사업 측면에서 타당성 뿐 아니라 회계관리와 재정운영의 타당성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재정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가칭)‘회계타당성분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동 보고서에서는 회계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계획과 사업의 성과관리계획 그리고 성과책임 방안 등을 특히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1개 회계(기금) - 다 부서(계정)’에 대한 효율적 회계관리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기금내 설치된 개별 계정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계정 자체가 별도 독립 기금의 특성을 가지게 됨. 기금 숫자는 축소되지만 회계관리와 재정운영에서 효율성 조건을 확보하기 힘들.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단일한 기금을 운영할 때보다 회계관리의 효율성이 낮을 수 있음.
  - ‘1회계-다부서 계정’을 인정하는 조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연계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을 경우, 계정의 부서 분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 각각의 계정사업을 통합하여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각 계정들간 사업연계 혹은 업무협력 등과 관련된 계정협력 조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단일 기금내 개별 계정별로 성과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기금예산편성시 계정간 재원배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관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소관 부서들간 계정사업에 대한 성과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임.

## 2.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의 사업방식개선 노력 강화

### ○ 특별회계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활성화

- 사업성 기금에서 매년 예치금과 예탁금 비중이 높은 회계에 대한 일몰 심사 강화를 강화하여 희소한 예산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의
- 법정존속기한(최대 5년)이 도래한 기금을 일몰심사하여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음 존속기한까지 연장 운영됨. 연장운영 판정 결과를 다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존속기한 연장 심사에서 회계적 타당성이 취약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조건부 연장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매년 연장타당성 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회계별 고유재원 확충 노력 강화

-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회계별 타회계 재원의존율은 평균 21.6%로서 높지는 않음. 하지만 재원의존율이 60%가 넘는 회계(계정)가 8개가 있음.
- 문화진흥기금, 관광마이스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재원의존율은 각각 83.9%, 99.1%, 100%로서 일반회계 전환이 적절할 것으로 판정됨.
-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준비금계정과 손실보전금계정의 재원의존율은 각각 70.5%, 74.0%로서 경륜사업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판정됐는데, 경륜사업을 통한 수익금 일부를 계정재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81.0%로서 재원의존율이 상당히 높음. 동 기금의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이외 각종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망됨.
- 중소기업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계정)에서 타회계 재원의존율은 65.2%인데, 재정지원의 투자적 성과책임을 높이고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지역사회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과 관련한 공공재원에서 시분청의 일반회계의 비중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탁금, 예치금 제외) 집행률 제고

- 분석대상 회계 전체의 집행률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79.9% 수준으로 높지 않음. 적지 않은 재원이 연도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음.
- 회계별로 집행률 편차가 상당함. 집행률이 60% 미만인 회계(계정)은 8개(특별회계 4개, 기금계정 4개)임.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집행률이 0.0%로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음.
- 회계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설계와 적극집행 노력을 강화해야 함. 집행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경우 차기회계연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을 감축하는(예, 10% 감축 등) 유의미한 수준에서 재정적인 패널티 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실질수지비율 관리를 통한 사업운영의 안정성 제고

- 대부분의 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인 기준에서 회계의 재정건전성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실질수지비율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계관리의 건전성 쟁점이 잠재돼 있음.
- 분석대상 회계의 실질수지비율은 2022년 결산기준으로 평균 -74.5%임. 체육진흥기금(손실보전금계정)의 지표값이 1,882.2%로서 특정 연도에 이상치가 발생했는데, 이를 제외한 평균값은 -30.4% 수준
  - 당초계획보다 집행액이 많았던 회계(계정)는 13개로서 최저 -8.5%에서 최대 -1,882.5%까지 편차가 상당함. 이와 달리 당초 계획대비 집행이 적어 실질수지비율이 플러스값을 가진 회계(계정)에서도 편차가 상당함. 최저 0.1%(도시철도사업)에서 100.0%(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으로 분포
  - 실질수지비율이 높은 것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거나 당초예산에서 재정사업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실질수지비율은 사업운영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해석할 때 유용한 지표임. 지표의 마이너스값과 플러스 값이 일반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차별 사업관리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해석
  - 기금 실질수지는 예치예탁을 제외한 수입(조성액)에 비해 예치예탁을 제외한 지출(사용액)이 많으면 마이너스 값이 됨.
  - 기금은 단년도 중심의 일반·특별회계와 다르게 사업 수요가 많은 연도에는 수입(예치예탁제외)보다 지출(예치예탁제외)이 많으며 조성액이

감소하는 회계적 특성이 있음. 이에 따라 일반·특별회계보다 실질수지가 불안정한 경향이 있음.

### 3.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강화

#### ○ 기금회계의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정립

- 기금회계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성과관리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일상적인 재정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금 혹은 특별회계의 별도 독립회계로 운영해야할 재정적인 정당성 조건이 포함된 성과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함.
- 회계별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와 도전적 성과목표치 설정하여 회계제도 유지가 지역사회 혹은 지역경제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기금회계에서 중기전략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체계 정립 필요
-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에 잠재돼 있는 재원칸막이 효과와 재원기득권 고착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의 책임성과 사업운영 과정 및 성과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수단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연례적으로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금사업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의 심층성과 적정성을 정례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계관리 기반을 확보함.
  - 회계별로 성과관리에서 시민참여와 성과정보 공개 활성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독립 회계 운영의 목적은 문제해결 지향이라는 점을 강조

- 소규모 영세회계의 상징주의 한정에 주의해서 [재정천정]의 병리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회계내역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성과정보 공개 등의 재정민주주의 수단들을 활성화하여 회계사업에서 재정칸막이 혹은 재정 기득권 형성에

다른 지대추구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일반회계와 프로그램 수준에서 통합운영 필요 (특히 복지, 환경 등)

- 예, 두 가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경우, 한정된 세입재원을 한정된 영역에 소비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에너지·환경·탄소중립 관점에서 통합 운영 필요
- 복지부문 재정사업들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의 잔여적 지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재정사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사업 뿐 아니라 일반회계 사업 모두를 포괄하여 대상자별 종합지원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4.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가치비중 차이에 대한 유의

-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 중심 예산운영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재정관리 제도임. 일반회계 재정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기획예산부서에서 재정관리를 총괄하고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통해 적정 수준에서 상호 관리 견제 기능이 형성됨.
- 특별회계와 기금은 내역사업을 소관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관리와 사업관리를 함께 담당하는데, 부서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예산관리 보다는 사업관리를 상대적으로 중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예산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관점에서 해당 회계제도를 관리하는 역량이 취약할 수 있음.
- 사업부서에서는 특별회계 혹은 기금회계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면 독립적으로 해당 사업 혹은 관련 예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하지만 기획과 예산의 관점에서는 합법성은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제해결지향적인 성과관리와 재원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영역으로 인식함.
- 사업부서와 기획부서간에 회계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면, 정례적인 제도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서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산재원 혹은 지출관리를 기획 예산부서가 총괄할 때, 관련 사업부서들과 예산 및 재정관리와 관련된 각종 규범과 혁신 사례 중심으로 가치공유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회계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록]

1. 설문지 양식
2. 설문항목별·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3. 기금회계 기초조사보고서 양식

## [부록 1]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설문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부산시의 용역과제로 ‘부산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부산시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설문의 목적은 “부산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분석에서 항목별 평가가중치를 개발”하고, 부산시의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운영 관련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사에서 응답하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연구자가 전혀 알 수 없도록 조사되며, 응답결과를 집합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부산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의 발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4.24

연구책임 : 이재원 (부경대 교수)

Tel: 010-3900-4612

E-mail: jwpknu@naver.com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보호됩니다.

### I.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 대표 업무분야 주제어 기입 (예, 사회복지) )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 ) ② 여성 ( )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4. 귀하의 직급은? ( 급)
5. 귀하의 공직근무연수는? ( 년)
6. 귀하의 부서(과단위)에서 운영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수는? (없을 경우 “0” 기입)  
6-1 기타특별회계 수 ( 개) 6-2 기금회계 수 ( 개)

### II. 부산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한 일반

[문 1] 부산시 예산운영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 회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예산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② 중앙정부 법령 사항 이외는 특별회계·기금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③ 부산시 자체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 2]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잘못 운영	잘못 운영	보통	잘 운영	매우 잘 운영
2-1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①	②	③	④	⑤
2-2 중기재정운영계획	①	②	③	④	⑤
2-3 고유목적 사업 중심 회계운영	①	②	③	④	⑤
2-4 재정사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①	②	③	④	⑤

[문 3] 부산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사업들과 일반회계 사업간의 “유사 중복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없다 ( )    ② 없는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어느 정도 있다    ⑤ 매우 심하다 ( )

[문 4] 부산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가 다음 각 항목별로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비효율	비효율	보통	효율적	매우 효율적
4-1 독립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①	②	③	④	⑤
4-2 사업별 자원배분의 유연성·재량성	①	②	③	④	⑤
4-3 일반회계 등 타 회계와 연계 조정	①	②	③	④	⑤
4-4 회계관리 관련 인력 등 관리효율성	①	②	③	④	⑤

[문 5]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다음 회계특성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 않음	동의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5-1 회계 자체적으로 충분한 세입 확보가능	①	②	③	④	⑤
5-2 회계내 재정사업의 충분한 집행률 관리	①	②	③	④	⑤

[문 6]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성과관리에 대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6-1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목표치 설정	①	②	③	④	⑤
6-2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①	②	③	④	⑤
6-3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환류	①	②	③	④	⑤
6-4 회계 설치의 결과지향적 목적 달성	①	②	③	④	⑤

[문 7]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항목별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 않음	동의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7-1 자원배분의 칸막이 현상	①	②	③	④	⑤
7-2 재정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기득권 형성	①	②	③	④	⑤
7-3 방만한 회계운영에 따른 건전성 위험	①	②	③	④	⑤
7-4 소관 부서의 회계 관리 역량 부족	①	②	③	④	⑤
7-5 회계에 대한 감사 및 모니터링 부족	①	②	③	④	⑤

[문 8] 부산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설치 및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않음 ( )    ② 동의않음 ( )    ③ 보통 ( )  
 ④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 )

### Ⅲ. 성과분석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설문

#### □ 부산시 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체계

		평가지표	비계량지표	평가산식
합목적성	합법성	법적 근거의 구체성/법적 의무성	정성평가	10점척도
	합목적성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정성평가	10점척도
		회계적 타당성	정량평가	타회계재원의존율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효율성	유사중복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정성평가	10점척도
	관리효율	독립 예산단위 사업으로서 관리효율성	정성평가	10점척도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정량평가	자체세입증감률 집행률
책임성	회계책임 (건전성)	회계의 재정건전성	정량평가	실질수지비율
				미회수채권비율 지방채의존율
	성과책임 (사업성과)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문제해결성	정성평가	10점척도
성과목표 달성 정도		정량평가	목표달성률	

## 1. 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표 1>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숫자로 표시)

평가항목	내용	우선순위
합목적성	특별회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에 대한 평가	( )
효율성	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관리효율에 대한 평가	( )
책임성	특별회계의 회계책임과 성과 책임에 대한 평가	( )

<표 2>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에 체크 √)

평가항목 (L)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R)
합목적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효율성
합목적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책임성
효율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책임성

## 2. [합목적성] 항목내 세부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표 3> 특별회계 설치의 합목적성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 (1~4순위 기입)

세부 평가지표		내용	우선순위
합법성		법적 근거의 구체성 및 법적 의무성에 대한 평가	( )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일반회계와 구분된 사업 및 자원 관리의 필요성 중장기 운용계획과 방향의 적절성·합리성·일관성	( )
회계적 타당성	타회계재원의존율	$\frac{\text{자체재원}}{\text{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 \times 100$	( )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frac{\text{고유목적사업비}}{\text{특별회계세출결산총액}} \times 100$	( )

<표 4> 합목적성 세부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항목 (L)	매우 중요	중요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R)	
합법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합법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타회계재원 의존율
합법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타회계재원 의존율
전략과 계획의 적정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타회계재원 의존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3. [효율성] 항목내 세부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표 5>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 (1~4순위 기입)

세부 평가지표		내용	우선순위
유사중복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성	( )
관리효율성		독립 예산단위 사업으로서 관리 효율성	( )
집행 효율성	자체세입증감률	자체세입증감률(최근 3년평균)	( )
	집행률	$\frac{\text{집행액}}{\text{예산현액}} \times 100$	( )

<표 6> 효율성 세부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항목 (L)	매우 중요	중요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R)	
유사중복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관리효율성
유사중복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자체세입 증감률
유사중복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집행률
관리효율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자체세입 증감률
관리효율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집행률
자체세입 증감률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집행률

#### 4. [책임성] 항목내 세부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표 6> 특별회계의 책임성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 (1~5순위 기입)

세부 평가지표		내용	우선순위
회계 책임	실질수지비율	$\frac{\text{실질수지액}}{\text{일반재원 결산액}} \times 100$	( )
	미회수채권비율	$\frac{\text{미회수채권액}}{\text{기한도래 채권액}} \times 100$	( )
	지방채의존율	$\frac{\text{지방채발행액}}{\text{특별회계수입결산총액}} \times 100$	( )
성과 책임	성과목표 적절성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문제해결성	( )
	성과목표 달성도	$\frac{\text{성과목표}}{\text{성과실적}} \times 100$	( )

<표 7> 책임성 세부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항목 (L)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R)
실질수지비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미회수채권비율
실질수지비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지방채의존율
실질수지비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목표 적절성
실질수지비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목표 달성도
미회수채권 비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지방채의존율
미회수채권 비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목표 적절성
미회수채권 비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목표 달성도
지방채의존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목표 적절성
지방채의존율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목표 적절성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목표 달성도

## [부록 2] 설문항목별·응답자 유형별 상세결과

[문 1] 부산시 예산운영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 중심	제한적 범위에서 특회 기금	특회 기금 활성화	합계	응답자 수
성별	남성	20.5	56.8	22.7	100.0	44
	여성	20.3	45.3	34.4	100.0	64
	합계	20.4	50.0	29.6	100.0	108
연령	20대	33.3	50.0	16.7	100.0	6
	30대	17.7	50.0	32.3	100.0	62
	40대	24.2	45.5	30.3	100.0	33
	50대이상	14.3	71.4	14.3	100.0	7
	합계	20.4	50.0	29.6	100.0	108
직급	6급	20.0	65.0	15.0	100.0	20
	7급	18.4	48.7	32.9	100.0	76
	8급	40.0	30.0	30.0	100.0	10
	합계	20.8	50.0	29.2	100.0	106
근무 기간	5년미만	27.3	45.5	27.3	100.0	11
	10년미만	17.5	52.5	30.0	100.0	40
	15년미만	17.9	42.9	39.3	100.0	28
	20년미만	27.8	61.1	11.1	100.0	18
	20년이상	18.2	45.5	36.4	100.0	11
	합계	20.4	50.0	29.6	100.0	108
담당 업무	기획재경	15.8	73.7	10.5	100.0	19
	행정문화	26.1	34.8	39.1	100.0	23
	복지환경	13.6	50.0	36.4	100.0	22
	해양도시안전	28.6	47.6	23.8	100.0	21
	교통건설	17.4	47.8	34.8	100.0	23
	합계	20.4	50.0	29.6	100.0	108
담당 회계	기타특별회계	13.3	66.7	20.0	100.0	15
	기금	27.5	47.5	25.0	100.0	40
	기타특회,기금모두	-	100.0	-	100.0	5
	모두일반회계	18.8	41.7	39.6	100.0	48
		20.4	50.0	29.6	100.0	108

[문 2]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5점척도)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2-1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2-2 재정운영계획	2-3 고유목적사업 중심회계운영	2-4 재정사업회계 정보 투명성
성별	남성	3.61	3.59	3.61	3.95
	여성	3.56	3.45	3.76	3.74
	합계	3.58	3.50	3.70	3.82
연령	20대	3.83	3.83	4.00	3.83
	30대	3.54	3.43	3.63	3.72
	40대	3.65	3.62	3.85	4.06
	50대이상	3.43	3.43	3.43	3.71
	합계	3.58	3.50	3.70	3.82
직급	6급	3.55	3.60	3.75	4.10
	7급	3.57	3.48	3.70	3.80
	8급	3.55	3.55	3.64	3.45
	합계	3.57	3.50	3.70	3.82
근무 기간	5년미만	3.62	3.46	3.77	3.46
	10년미만	3.44	3.26	3.58	3.74
	15년미만	3.67	3.67	3.70	3.83
	20년미만	3.67	3.67	3.83	4.11
	20년이상	3.73	3.82	3.91	4.09
	합계	3.58	3.50	3.70	3.82
담당 업무	기획재경	3.30	3.22	3.52	3.77
	행정문화	3.61	3.43	3.74	3.65
	복지환경	3.87	3.91	4.09	4.17
	해양도시안전	3.61	3.52	3.57	3.83
	설교통건	3.52	3.43	3.61	3.70
	합계	3.58	3.50	3.70	3.82
담당 회계	기타특별회계	3.63	3.50	3.56	3.94
	기금	3.49	3.41	3.68	3.88
	기타특회,기금모두	3.67	3.67	3.78	4.00
	모두일반회계	3.63	3.55	3.76	3.71
	합계	3.58	3.50	3.70	3.82

[문 3] 부산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사업들과 일반회계 사업간의 “유사중복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5점척도) 점수 낮을수록 긍정적		① 전혀 없다	② 없는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있다	⑤ 매우 심하다	합계	응답자 수	평균 (5점척도)
성별	남성	4.5	34.1	40.9	13.6	6.8	100.0	44	2.84
	여성	7.0	25.4	40.8	25.4	1.4	100.0	71	2.89
	합계	6.1	28.7	40.9	20.9	3.5	100.0	115	2.87
연령	20대	-	33.3	66.7	-	-	100.0	6	2.67
	30대	8.8	23.5	44.1	19.1	4.4	100.0	68	2.87
	40대	-	32.4	32.4	32.4	2.9	100.0	34	3.06
	50대이상	14.3	57.1	28.6	-	-	100.0	7	2.14
	합계	6.1	28.7	40.9	20.9	3.5	100.0	115	2.87
직급	6급	-	40.0	35.0	20.0	5.0	100.0	20	2.90
	7급	8.5	26.8	40.2	20.7	3.7	100.0	82	2.84
	8급	-	18.2	63.6	18.2	-	100.0	11	3.00
	합계	6.2	28.3	41.6	20.4	3.5	100.0	113	2.87
근무 기간	5년미만	7.7	30.8	30.8	30.8	-	100.0	13	2.85
	10년미만	7.0	23.3	51.2	11.6	7.0	100.0	43	2.88
	15년미만	6.7	16.7	40.0	33.3	3.3	100.0	30	3.10
	20년미만	5.6	38.9	33.3	22.2	-	100.0	18	2.72
	20년이상	-	63.6	27.3	9.1	-	100.0	11	2.45
	합계	6.1	28.7	40.9	20.9	3.5	100.0	115	2.87
담당 업무	기획재경	-	21.7	30.4	34.8	13.0	100.0	23	3.39
	행정문화	17.4	26.1	47.8	8.7	-	100.0	23	2.48
	복지환경	8.7	34.8	39.1	17.4	-	100.0	23	2.65
	해양도시안전	4.3	43.5	26.1	26.1	-	100.0	23	2.74
	교통건설	-	17.4	60.9	17.4	4.3	100.0	23	3.09
	합계	6.1	28.7	40.9	20.9	3.5	100.0	115	2.87
담당 회계	기타특별회계	12.5	18.8	62.5	-	6.3	100.0	16	2.69
	기금	7.3	34.1	26.8	26.8	4.9	100.0	41	2.88
	기타특회,기금모두	11.1	33.3	44.4	11.1	-	100.0	9	2.56
	모두일반회계	2.0	26.5	44.9	24.5	2.0	100.0	49	2.98
	합계	6.1	28.7	40.9	20.9	3.5	100.0	115	2.87

[문 4] 부산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운영 효율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5점척도)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4-1 독립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4-2 사업별 재원배분의 유연성·재량성	4-3 일반회계 등 타회계와 연계조정	4-4 회계관리 관련인력 등 관리효율성
성별	남성	3.50	3.75	3.50	3.30
	여성	3.58	3.58	3.24	3.20
	합계	3.55	3.64	3.34	3.23
연령	20대	3.67	3.67	3.67	3.33
	30대	3.54	3.63	3.32	3.19
	40대	3.59	3.68	3.26	3.24
	50대이상	3.29	3.57	3.57	3.57
	합계	3.55	3.64	3.34	3.23
직급	6급	3.60	3.95	3.30	3.35
	7급	3.55	3.61	3.38	3.22
	8급	3.45	3.45	3.09	3.09
	합계	3.55	3.65	3.34	3.23
근무 기간	5년미만	3.69	3.46	3.31	3.46
	10년미만	3.42	3.58	3.30	3.09
	15년미만	3.63	3.60	3.30	3.13
	20년미만	3.56	3.83	3.33	3.39
	20년이상	3.64	3.91	3.64	3.55
	합계	3.55	3.64	3.34	3.23
담당 업무 (부서)	기획재경	3.39	3.65	3.13	2.96
	행정문화	3.57	3.43	3.30	3.30
	복지환경	3.70	4.00	3.74	3.61
	해양도시안전	3.57	3.61	3.26	3.09
	교통건설	3.52	3.52	3.26	3.22
	합계	3.55	3.64	3.34	3.23
담당 회계	기타특별회계	3.56	3.69	3.56	3.44
	기금	3.51	3.90	3.32	3.05
	기타특회,기금모두	3.78	3.44	3.33	3.33
	모두일반회계	3.53	3.45	3.29	3.31
	합계	3.55	3.64	3.34	3.23

[문 5]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회계 특성에 대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평균(5점척도)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5-1 회계 자체적으로 충분한 세입확보 가능	5-2 회계내 재정사업의 충분한 집행률 관리
성별	남성	3.00	3.41
	여성	3.18	3.46
	합계	3.11	3.44
연령	20대	3.33	3.50
	30대	3.13	3.38
	40대	3.00	3.53
	50대이상	3.29	3.57
	합계	3.11	3.44
직급	6급	2.70	3.40
	7급	3.18	3.48
	8급	3.27	3.18
	합계	3.11	3.43
근무기간	5년미만	3.15	3.31
	10년미만	3.21	3.40
	15년미만	2.97	3.50
	20년미만	3.00	3.39
	20년이상	3.27	3.73
	합계	3.11	3.44
담당 업무 (부서)	기획재경	2.61	3.17
	행정문화	3.26	3.48
	복지환경	3.26	3.74
	해양도시안전	3.30	3.43
	교통건설	3.13	3.39
	합계	3.11	3.44
담당 회계	기타특별회계	3.44	3.56
	기금	2.83	3.44
	기타특회,기금모두	3.11	3.56
	모두일반회계	3.24	3.39
	합계	3.11	3.44

[문 6]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성과관리와 관련한 각 항목들이 어느정도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5점척도)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6-1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 목표치 설정	6-2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6-3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환류	6-4 회계설치의 결과지향적 목적달성
성별	남성	3.48	3.23	3.45	3.43
	여성	3.44	3.16	3.41	3.63
	합계	3.46	3.18	3.43	3.55
연령	20대	3.67	3.33	3.67	3.67
	30대	3.53	3.26	3.50	3.57
	40대	3.27	3.06	3.27	3.55
	50대이상	3.43	2.86	3.29	3.29
	합계	3.46	3.18	3.43	3.55
직급	6급	3.42	2.89	3.26	3.58
	7급	3.48	3.22	3.44	3.56
	8급	3.36	3.27	3.64	3.36
	합계	3.46	3.17	3.43	3.54
근무 기간	5년미만	3.31	3.31	3.46	3.46
	10년미만	3.47	3.21	3.49	3.49
	15년미만	3.57	3.20	3.47	3.63
	20년미만	3.33	2.94	3.17	3.50
	20년이상	3.50	3.30	3.50	3.80
	합계	3.46	3.18	3.43	3.55
담당 업무 (부서)	기획재경	3.26	2.70	3.13	3.35
	행정문화	3.39	3.22	3.52	3.52
	복지환경	3.64	3.41	3.59	3.82
	해양도시안전	3.48	3.30	3.43	3.48
	교통건설	3.52	3.30	3.48	3.61
	합계	3.46	3.18	3.43	3.55
담당 회계	기타특별회계	3.63	3.38	3.56	3.56
	기금	3.35	2.93	3.23	3.48
	기타특회,기금모두	3.56	3.00	3.67	3.78
	모두일반회계	3.47	3.37	3.51	3.57
	합계	3.46	3.18	3.43	3.55

[문7]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항목별 쟁점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평균(5점척도) 점수 높을수록 부정적		7-1 재원배분의 칸막이 현상	7-2 지역사회 기득권 형성	7-3 회계운영의 건전성 위협	7-4 회계관리 역량부족	7-5 회계 감사 및 모니터링부족
성별	남성	3.16	3.20	3.23	3.14	3.11
	여성	3.21	2.93	2.83	3.04	2.96
	합계	3.19	3.03	2.98	3.08	3.02
연령	20대	3.33	3.33	2.67	2.67	2.83
	30대	3.07	2.90	3.00	3.13	3.04
	40대	3.44	3.24	3.06	3.09	3.06
	50대이상	3.00	3.14	2.71	2.86	2.71
	합계	3.19	3.03	2.98	3.08	3.02
직급	6급	3.20	3.00	3.00	3.00	2.90
	7급	3.23	3.05	2.95	3.10	3.05
	8급	3.00	3.09	3.27	3.00	2.91
	합계	3.20	3.04	2.99	3.07	3.01
근무 기간	5년미만	2.92	2.92	2.69	3.00	3.00
	10년미만	3.19	2.91	2.93	3.14	3.07
	15년미만	3.17	3.13	3.17	3.23	3.17
	20년미만	3.50	3.11	3.00	2.78	2.78
	20년이상	3.09	3.27	3.00	3.00	2.82
	합계	3.19	3.03	2.98	3.08	3.02
담당 업무 (부서)	기획재경	3.17	2.91	2.83	3.22	3.17
	행정문화	3.30	3.17	3.13	3.04	2.87
	복지환경	2.83	2.52	2.57	2.57	2.57
	해양도시안전	3.26	3.30	3.22	3.30	3.30
	교통건설	3.39	3.26	3.17	3.26	3.17
	합계	3.19	3.03	2.98	3.08	3.02
담당 회계	기타특별회계	3.00	2.69	2.75	2.69	2.69
	기금	3.00	2.73	2.76	2.88	2.83
	기타특회기금모두	2.67	2.78	2.22	2.89	2.67
	모두일반회계	3.51	3.45	3.39	3.41	3.35
	합계	3.19	3.03	2.98	3.08	3.02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 관리하는 부서는 대체로 긍정적 인식, 부서예산이 모두 일반회계인 경우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 회계운영 및 성과관리 관련 상호 소통 필요

[문 8] 부산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설치 및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평균(5점척도)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① 전혀 동의 않음	② 동의 않음	③ 보통	④ 동의 함	⑤ 매우 동의 함	합계	빈도	평균
성별	남성	-	11.6	53.5	25.6	9.3	100.0	43	3.33
	여성	-	8.5	39.4	42.3	9.9	100.0	71	3.54
	합계	-	9.6	44.7	36.0	9.6	100.0	114	3.46
연령	20대	-	-	-	83.3	16.7	100.0	6	4.17
	30대	-	10.4	41.8	37.3	10.4	100.0	67	3.48
	40대	-	8.8	52.9	29.4	8.8	100.0	34	3.38
	50대이상	-	14.3	71.4	14.3	-	100.0	7	3.00
	합계	-	9.6	44.7	36.0	9.6	100.0	114	3.46
직급	6급	-	10.0	50.0	40.0	-	100.0	20	3.30
	7급	-	11.1	43.2	33.3	12.3	100.0	81	3.47
	8급	-	-	45.5	45.5	9.1	100.0	11	3.64
	합계	-	9.8	44.6	35.7	9.8	100.0	112	3.46
근무 기간	5년미만	-	-	38.5	53.8	7.7	100.0	13	3.69
	10년미만	-	7.0	48.8	30.2	14.0	100.0	43	3.51
	15년미만	-	13.8	34.5	44.8	6.9	100.0	29	3.45
	20년미만	-	22.2	44.4	27.8	5.6	100.0	18	3.17
	20년이상	-	-	63.6	27.3	9.1	100.0	11	3.45
	합계	-	9.6	44.7	36.0	9.6	100.0	114	3.46
담당 업무 (부서)	기획재경	-	-	39.1	43.5	17.4	100.0	23	3.78
	행정문화	-	13.0	43.5	30.4	13.0	100.0	23	3.43
	복지환경	-	26.1	52.2	21.7	-	100.0	23	2.96
	해양도시안전	-	4.5	54.5	27.3	13.6	100.0	22	3.50
	교통건설	-	4.3	34.8	56.5	4.3	100.0	23	3.61
	합계	-	9.6	44.7	36.0	9.6	100.0	114	3.46
담당 회계	기타특별회계	-	18.8	56.3	25.0	-	100.0	16	3.06
	기금	-	12.2	39.0	39.0	9.8	100.0	41	3.46
	기타특회기금모두	-	22.2	66.7	11.1	-	100.0	9	2.89
	모두일반회계	-	2.1	41.7	41.7	14.6	100.0	48	3.69
	합계	-	9.6	44.7	36.0	9.6	100.0	114	3.46

정기적인 회계 점검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동의. 다만, 인령별·직급별·부서별 인식 차이 상당함. 일반회계 부서와 기특·기금회계 운영부서간 인식차이 특히 큼.

### [부록 3]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조사보고서 양식

□ 특별회계·기금명 : \_\_\_\_\_

□ 조성 및 운용현황(2020~2024)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해당연도초 조성액				
해당연도 사용액				
해당연도말 조성액				

□ 기초조사보고서 작성자

부 서 명		
직급 / 성명		
연 락 처	사 무 실	
	H . P	
	이 메 일	

2023년 4월 일

## I. 특별회계·기금의 적법성

### 1. 합법성

#### 1-1 설치근거와 관리방식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과 근거 조항 (○○○법률 제○○조)	
	조례	조례명과 근거 조항 (○○○조례 제○○조)	
설치연도	(           년)	운용개시연도	(           년)

#### 1-2 회계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가? (부서에서 설명)

※ 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의 강도(의무설치 혹은 재량설치)에 대한 부서의 입장 (예1, 법적의무 설치 특별회계이어서 설치관련 지자체 재량없음. 예2,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지만 지자체가 재량으로 설치·변경·폐지할 수 있음 등)

※ ※ 회계에 대한 특·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 등과 비교 해석

#### 1-3 회계 및 내역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부서의 조치 (최근 3년)

	해당연도 ( '20~'21)	지적사항	부서의 조치
중앙정부 소관부처		·	·
		·	·
감사원 감사		·	·
		·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
		·	·

### 2. 합목적성

#### 2-1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사업/재원 관리할 필요성

※ 회계의 내역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집행할 경우(통합 혹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기술

**<회계의 내역사업의 내용과 사용액(운용액) 규모 추이(당초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 명칭)	사업목적(내용)	2021	2022	2023
- ..... 사업				
- ..... 사업				

**2-2 중장기운용계획과 방향의 적절성/합리성/일관성**

※ 회계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당초 또는 변경된 설치목적과 일관적인가?

회계 설치 이후 연혁 혹은 주요 개편내용 (내역사업추가·폐지, 목표변경, 자원구성 변경 등)	개편 목적과 성과
- ○○○○	
- ○○○○	
- ○○○○	
- ○○○○	

**<회계 내역사업별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 명칭)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업					
- ..... 사업					

**2-3 독립 회계로서 존치할 수 있는 회계적 타당성**

- 2-3-1 (세입타당성) 타회계재원의존율 =  $\frac{(\text{일반회계} + \text{특별회계} + \text{기금})\text{전입금}}{\text{특별회계수입결산총액}} \times 100$

※ 특이사항을 반영한 타회계 의존율 계산방법(자체 판단하여 작성)

회계결산보고서 상의 예산과목 기준이 아니라 재원의 실질적 특성에 따라 의존율 계산

- 사례1) 법령상 세외수입을 전입금으로 이전받은 경우 이를 자체재원에 합산하여 계산
- 사례2) 반납기한 경과했으나 향후 반납계획이 없는 '예수금수입'은 타회계 전입금에 합산

(A) 예치금과 예탁금 포함

※ 2022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회계 수입 총액 (A=B+H)	자체자원(B)		타회계 전입금 (H)				지표값 ( $\frac{I}{A} \times 100$ )
		자체재 원(C)	이자수입 등 기타 (D)	일반회계 (F)	특별회계 (G)	기금 (G)	합계 (I=F+G+H)	
2020								
2021								
2022								

(B) 예치금과 예탁금 제외

연도별	회계 수입 총액 (A=B+H)	자체자원(B)		타회계 전입금 (H)				지표값 ( $\frac{I}{A} \times 100$ )
		자체재 원(C)	이자수입 등 기타 (D)	일반회계 (F)	특별회계 (G)	기금 (G)	합계 (I=F+G+H)	
2020								
2021								
2022								

※ 세입 중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2-3-2 (세입타당성)

- 지방채 의존율 =  $\frac{\text{지방채 발행액}}{\text{특별회계수입결산총액}} \times 100$

※ 2022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회계수입 총액 (A)	지방채 발행 총액 (B)	지표값 ( $\frac{B}{A} \times 100$ )
2020			
2021			
2022			

2-3-3 (세출타당성) 고유목적사업비율 =  $\frac{\text{고유목적사업비}}{\text{회계지출총액}}$

※ 2022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별	특별회계 총지출액 (A=B+C)	고유 목적 사업비 (B)	고유목적외 사업비(C)							지표값 ( $\frac{B}{A} \times 100$ )
			인건비	물건비	용자금	차입금 상환	예치금	예탁금	기타 (전출금 등)	
2020										
2021										
2022										

## II. 회계의 효율성

### 1. 유사중복

※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 1-1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기금과의 유사·중복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소관부서)	'23년 사업비 (백만원)	유사중복 사업내용
1	일반회계		※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목적 등
	타 특별회계		
	기금		
2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기금		

#### 1-2 최근 3년간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 사항

지적내용	-
부서의견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 등)	-  ※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적사항 및 그에 부서 입장(조치) 기재

### 2. 관리효율

#### 2-1 독립 예산단위 사업으로서 관리 효율성/복잡성/비용효과성 정도

※ 아래 박스안의 내용 중심으로 관련사항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 충분성) 재정사업 수요 대비 특별회계 예산(운영비) 규모가 충분한가?</li> <li>- (적절성) 특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세, 부담금, 수수료 등의 특정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가?</li> <li>- (경직성) 특별회계사업이 매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되는가?</li> <li>- (내역사업 체계성) 내역사업의 구성과 지출 수준이 연도별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가?</li> <li>- (전달체계 효율성) 특별회계사업 운영과 관련한 민간 전달체계(중간관리조직)의 규모(인력, 예산)</li> <li>- (기타) 특별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때, 일반회계·타 특별회계·기금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 등</li> </ul>
---

2-2 세입의 효율성 : 자체세입 증감율

※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세입총액 (A)	자체자원 (B)	전년대비 증감률	예치예탁 제외세입 (A)	자체자원 (B)	전년대비 증감률
2020						
2021						
2022						
지표값						

2-3 세출의 효율성 : 집행률

※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기준			예치예탁 제외 기준		
	자체세입 증감률			자체세입 증감률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X 100)	예치금, 예탁금 제외 지출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X 100)
2021						
2021						
2022						
지표값						

III. 회계의 책임성

1. 회계책임(건전성)

1-1 실질수지비율 =  $\frac{\text{실질수지액}}{\text{일반재원 결산액}} \times 100$

※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실질수지액					일반재원 결산액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 집행잔액 (D)	실질 수지액 (A-B-C-D)	타회계 일반 전입금 (E)	특별회계 자체 수입액 (D)	일반재원 결산액 (E+D)
2020								
2021								
2022								

※ 1) 이월금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2) 타회계일반전입금 : 일반·특별회계·기금 전입금 가운데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재원

$$1-2 \text{ 미회수채권비율} = \frac{\text{미회수채권액}}{\text{기한도래채권액}} \times 100$$

※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기한도래 채권 (A)	미회수 채권 (B)	미회수채권비율 (B/A X 100)
2020			
2021			
2022			

## 2. 사업의 성과책임

### 2-1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문제해결성

※ 아래 박스안의 내용 중심으로 관련사항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사업이 설정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과 정도의 적절성</li> <li>- 회계 사업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여한 성과 (대표 사례 포함)</li> <li>- 회계 사업에 대한 부산시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과 평가 (언론보도 등 대표 사례포함)</li> </ul>
--

### 2-2 성과지표별 성과목표 달성 정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A)	성과실적 (B)	목표달성도 (B/A)	비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 사업계획서 혹은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 혹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관리 지표